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재택치료 안내서

제 6 판

2022. 2. 16.



중앙방역대책본부 · 중앙사고수습본부

동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심각단계에 대한 임시 기본 가이드라인이므로
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
- 본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재택치료를 위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, 환자 건강모니터링, 응급상황 시 조치사항,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, 생활환경 관리, 격리관리 등을 안내하고자 관련 학회 등의 자문을 거쳐 제작하였음
- 본 지침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을 준용하여 제작하였음
-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
- 변이 등 발생 시 변경되는 ‘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’은 별도 안내 공문 참조
- 의료기관 상담·처방체계(수가 포함), 약 처방배송수령(먹는치료제 및 담당약국 포함), 관련 서식 등 사항은 ‘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(중앙사고수습본부)’ 또는 별도 공문 참조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재택치료 안내서 6판 주요 개정사항

목차	5판	6판 개정	개정사유·근거
개요	<input type="checkbox"/> 재택치료 흐름도 ◦ 건강관리 기간 단축 7일(건강관리+격리관리)+3일(격리관리)	<input type="checkbox"/> 재택치료 흐름도 개편 ◦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차별적 관리 - 관리군별 건강모니터링 체계 요약 ◦ 격리관리 미시행 등 운영체계 전환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 -933(2022.1.6), 3855(2022.1.25), 4083(2022.1.25), 4719(2022.1.28), 4853(2022.1.28), 5368(2022.2.3), 6060(2022.2.9), 6421(2022.2.10), 6040(2022.02.14.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(2022.2.7., 2022.2.11.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-430(2022.2.10.) 코로나19감염증-19 중앙방역대책본부 -4430 (2022.2.7.), 4813(2022.2.9.), 5002(2022.2.11.), 5275(2022.02.14.) 코로나19 대응자립지원체 제11판
대상 및 기준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자 및 보호자 기준 ◦ (대상자) 코로나19 확진자 - 단,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생활치료센터, 입원 등 병상배정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자 분류 체계 개편 ◦ 재택치료자 분류시 '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' 및 초기상담 통해 분류 ◦ 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 개정사항 반영	
환자 관리	<input type="checkbox"/> 재택치료 유형 및 건강관리 ◦ 7일(건강관리+격리관리)+3일(격리관리) * 건강모니터링 8일째 종료 가능	<input type="checkbox"/> 재택치료 건강관리 체계 개편 ◦ (집중관리군)건강모니터링 + 전화 상담·처방 실시 ◦ (일반관리군)필요시 동네 병·의원 등 전화 상담·처방	
	<input type="checkbox"/> 단기·외래진료센터 지정 ◦ 건강보험 수가 및 격리입원치료비 적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응급 이송수단 확대 ◦ 구급차, 지자체 관리 이송수단(방역택시·콜벤 등), 개인차량	<input type="checkbox"/> 외래진료센터 이용 등 비응급 이송수단 확대 ◦ 재택치료자가 외래진료센터 진료로 외출 시 본인 운전으로 이동 가능	
	<input type="checkbox"/> 의약품 전달 체계 개선 ◦ 보건소 전달 또는 지역약사회에서 재택까지 배송가능	<input type="checkbox"/> 의약품 전달 체계 변경 ◦ 전국 모든 약국으로 처방 가능 ◦ 처방의약품 수령원칙 설정(동거인, 지인 수령)	
	<input type="checkbox"/> 재택치료키트 ◦ 환자올키트(7종) 및 동거인용 키트 별도 제공 ◦ 소아확진자용키트(만 12세 미만) 구성품 변경 - 산소포화도측정기 지급 제외	<input type="checkbox"/> 재택치료키트 구성 및 지원대상 변경 ◦ 지원대상: 60세이상 및 소아확진자* *12세미만, 소아확진자는 부모 요청시 지급 ◦ 구성품 변경 (7종→ 5종) - (성인용)체온계, 해열제, 산소포화도 측정기, 세척용 소독제, 자가검사키트▶ *(소아용)키트(체온계, 해열제, 감기약, 자가검사키트▶) ▶자가검사키트는 동거인용	
격리 관리	<input type="checkbox"/> 이탈관리 ◦ 자가격리앱을 통한 이탈관리	<input type="checkbox"/> 이탈관리 ◦ 자가격리앱 미설치, 이탈관리 미실시	
	<input type="checkbox"/> 격리기간 ◦ (재택치료자)10일→7일(현행)+3일(자가격리) ◦ (공동격리자)예방접종완료자 7일, 예방접종 미완료자 17일(추가격리 포함)	<input type="checkbox"/> 격리기간 ◦ (재택치료자)10일→7일 ◦ (동거인)예방접종력에 따라 격리실시, 기간 단축(재택치료자와 동일기간) - (접종완료자)격리면제, 수동감시 - (접종미완료자)재택치료자와 동일기간 ※접종미완료자의 추가격리 및 추가확진자 발생에 따른 격리연장 없음	
	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격리자 필수 외출 허용 ◦ 본인 진료, 약 수령	<input type="checkbox"/> 접종미완료 공동격리자의 외출 허용 ◦ 필수목적 외출 허용(2시간 이내) *접종완료자인 동거인은 격리면제	
생활 관리	<input type="checkbox"/>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◦ 재택치료자 대상 생활지원비 추가지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재택치료자 생활비 지원기준 개편 ◦ 재택치료자 대상 추가지원비 폐지 ◦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변경사항 반영(가구 단위→가구 내 격리자)	
서식		<input type="checkbox"/> 서식 간소화 및 분류 - 의료기관 관련 서식 부록으로 분리	
부록		<input type="checkbox"/> 부록 개편 ◦ (삭제)재택치료 업무매뉴얼,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◦ (추가)재택치료 안내문, 안내문자, 의료기관 등 관련 서식	

목 차

Part 1 재택치료 개요 및 사업내용

I 개요

- 1. 배경 및 목적 1
- 2. 개념 정의 1
- 3. 근거 법령 1
- 4. 흐름도 2

II 대상 및 기준

- 1. 대상자 및 보호자 기준 4
- 2. 생활환경 기준 5

III 재택치료 관리

- 1. 기본원칙 6
- 2. 대상자 선정절차 및 방법 7
- 3. 재택치료 통지 및 안내 8
- 4. 재택치료 유형 및 건강관리 9
- 5. 응급상황 대비 17
- 6. 격리관리 및 해제 21
- 7. 생활관리 23

IV 재택치료 지원

- 1. 재택치료비 지원 25
- 2. 생활지원비 지원 27
- 3. 기타 지원 27

목 차

Part 2 서식 및 참고자료

[서식]	28
1 입원·격리 통지서	28
2-1 입원·격리(재택) 및 외래 비용 신청서	29
2-2 약제(원외처방) 비용 신청서 서식(약국)	30
3 약제(원외처방) 비용 신청서 서식(약국)	31
[참고]	32
1 재택치료 근거 법령	32
2 재택치료 생활수칙 안내문 (예시)	34
3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입력 방법	42
4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입력 방법	49
5-1 (집중관리군) 생활치료센터·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등록·운영 절차 안내 ·	50
5-2 생활치료센터·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개요	54
5-3 진료지원시스템 환자용 모바일 앱 설치안내	56
6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입력 방법	57
7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	59
8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	60
[부록]	63
1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	64
2 대상자별 안내 문자	69
3 (의료기관 등 관련 서식)(별첨)	
4 (자주하는 질문(FAQ)(별첨)	

I 개요

1 배경 및 목적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개정(' 20.10.13. 시행)으로 ‘자가(自家)치료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, 안내서(제4판) 부터 ‘자가치료’의 시행상 용어를 “재택치료”로 명명함
-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,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가능하며 입원·시설 격리 치료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한 환자 등에 대한 재택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
- 이에, 임상적으로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환자 등에 대해 친숙한 환경에서 정서적,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코로나19 격리 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

2 개념 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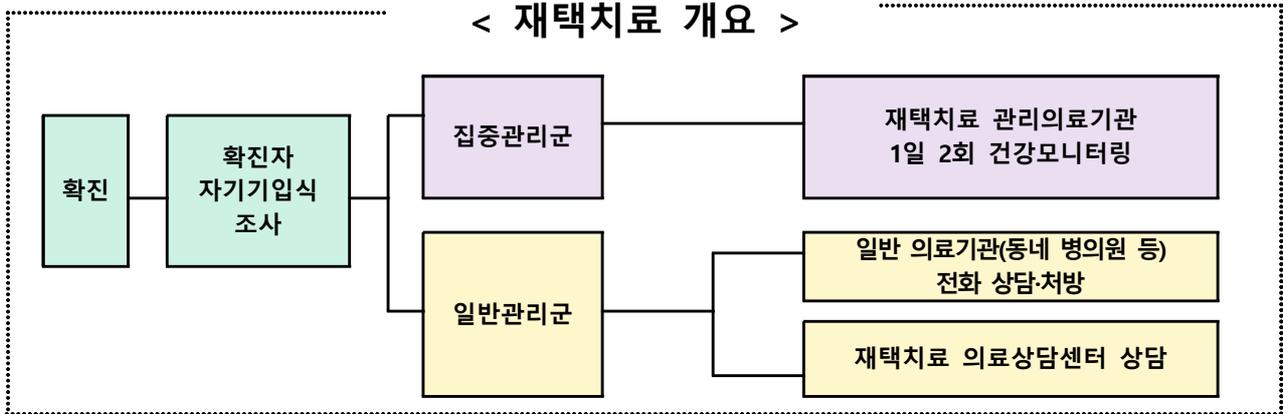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(감염병환자등의 관리)에 따라 ‘재택치료’는 환자의 상태,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해 질병청장, 시·도지사, 시·군·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, 입원치료·시설치료가 아닌 ‘집에서 받는 치료’를 의미함

3 근거 법령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감염병예방법)
 - 동법 제41조 (감염병환자등의 관리)
 - 동법 제47조 (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)
 - 동법 시행령 제23조 (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)

☞ <참고 1> 재택치료 근거 법령

4 개요 및 흐름도



- (원칙)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**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치료**임
 - **집중관리군*** 중심 건강모니터링으로 관리역량을 확보하고, 일반관리군은 전화 상담·처방을 중심으로 관리(중대본, '22.2.7)

* 집중관리군: 60세 이상,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(50대 이상 기저질환자, 면역저하자)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

- (건강관리) 대상군별 건강모니터링(관리) 체계

구 분	건강모니터링(관리)	비 고
집중관리군	·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*	*재택치료협력의사,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(대면진료: 외래진료센터)
일반관리군	·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 상담*	*호흡기전담클리닉,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, 기존에 다니던 동네 병의원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(대면진료: 외래진료센터)

※ 대면진료 시 외래진료센터에 사전 연락, 병원 안내에 따라 내원

- (격리관리)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**검체채취일로 부터 7일간 격리***
 - 단, 의료진이 격리해제기준에 미부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간 연장 가능
- * 격리기간 외출 금지.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에 대해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(자가격리자 앱 미사용),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 가능
- ※ 관련근거: '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의 격리관리 변경 재안내' (방대본-4430, 2022.2.7.)

- (흐름도) 확진 → 자기기입식 확진자 조사(환자) → 환자분류(보건소) → 재택치료(집중관리군 중심 건강관리) → 필요시 외래진료센터 → 격리해제 또는 중증화 시 의료기관 이송

< 재택치료 절차 및 내용 >		
절 차	내 용	담당기관
재택치료 대상 확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증도 확인(관리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의료진의 검토 요청) -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, 추가설문지 등 기초조사 • 재택치료 대상자 여부 조사.확인하여 결정, 병상배정반 통보 •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입력 	보건소/ 재택치료추진단
↓		
재택치료 통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격리 통지 문자 발송 (가구단위로 확진자에게 일괄발송) • 집중관리군 선정 후 재택치료협력의사 또는 관리의료기관 (건강관리) 지정 • 재택치료 안내문 전달(URL 문자전송) 및 생활수칙 안내 - 재택치료 담당자 및 의료기관 연락처(비상연락망) 등 제공 	재택치료추진단 (건강관리반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택치료 대상자(집중관리군에 한함) 정보 확인 	관리의료기관/ 재택치료추진단 (건강관리반)
물품지원 및 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택치료키트(60세이상 확진자) 등 지원물품 전달 * 소아확진자의 경우, 요청시 소아용재택치료키트 지원 	재택치료추진단
↓		
건강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초기문진 실시 (고위험군 분류시 재배정 요청) •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대상자 건강모니터링(1일 2회) 및 결과 입력 • 전화상담·처방(증상 발생시) • 외래진료 및 단기 입원진료(흉부 X선 촬영, 혈액검사, 항체치료제 투여, 대면진료 등 집중 진료.관리 필요시) • 응급이송 판단 및 요청(→ 시·도 병상배정반) 	재택치료추진단 (건강관리반+협력의사)/ 관리의료기관/ 외래진료센터, 동네 병의원 등
↓		
이송 (필요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택치료 대상자 이송가능 병원 확인 및 통보 	재택치료추진단 시·도 병상배정반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구급차 등 이송수단 확보 	재택치료추진단 (건강관리반)
↓		
재택치료 종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택치료 해제 전 환자 건강 상태 평가 • 재택치료 해제 여부 판단 	연계 의료기관 협력의사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(24:00)부터 격리해제(별도 통지 없음) • 재택치료 해제 확인서 발급(필요시) 	재택치료추진단 (건강관리반)

Ⅱ 대상 및 기준

1 대상자 및 보호자 기준

◆ (대상자 분류) 보건소는 확진자에게 확진사실 통보시 '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' 안내 및 초기 상담을 통해 환자 분류

(1) 재택치료 대상자

□ (대상자)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함

- 단, 아래 해당자는 병상(생활치료센터 포함) 배정 요청

- 입원·입소 요인(위험 요인)이 있는 자(동거인 포함)
-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(고시원, 셰어하우스, 노숙인 등)에 있는 자
- 소아·장애·70세이상 등의 경우로서, 돌봄이 필요하나 함께 격리할 보호자가 없는 자
-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

- ▶ 입원 고려 위험요인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 무증상이거나 재택기준에 부합하는 경증이면서 환자가 재택치료를 희망할 경우,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재택치료로 분류 가능
- ▶ 임상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예외적인 환자 혹은 상황이 있는 경우 자문 의료진을 구성하여 상의 하에 결정

◆ 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

-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
- 호흡곤란(일상생활 중에도 숨참)
-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
-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
-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
- 기저질환 또는 동반된 신체적 문제로 시급한 처치 및 치료를 요하는 경우
- 와상환자(낮시간의 50%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) (단,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)
- 증상(복통, 진통, 질출혈 등)을 동반한 임신부
-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*

* 호흡곤란, 청색증, 흉곽함몰, 뚜렷한 음식섭취(수유) 불량 및 탈수, 진단된 만성폐질환/심장질환/대사성질환/면역이상, 면역억제제 투여,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

(2) 보호자

- 보호자는 ▲입원요인이 없고, ▲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전달이 가능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

◆ 돌봄에 제한이 있는 자

-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에 제한이 있는 자
-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대상자 상태에 대해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자
- 방역수칙의 준수에 제한이 있는 자

* 보호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완료자▶이어야 함

▶3차 접종자, 2차 접종 후 14일-90일인 자

*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확진된 경우, 3차 접종자로 간주

※ 중증장애인이인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 활동지원 전문가 등도 보호자로 가능 (반드시 세대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)

- 보호자가 신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입원·시설 치료로 전환되는 경우, 확진자와 공동 입원·시설 격리하거나 새로운 보호자를 선정

2 생활환경 기준

-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자는 가급적 필수공간(화장실* 등)을 분리하여 사용

*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매 사용 후 소독하되, 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을 것

◆ 확진자가 타인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, 화장실, 주방 확보 여부 확인

Ⅲ 재택치료 관리

1 기본원칙

- (건강 관리) 집중관리군을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, 일반관리군은 전화 상담처방을 중심으로 관리
 - (집중관리군)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서 유선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1일 2회 모니터링
 - 필요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의 전화상담·처방 등 활용 가능
 - (일반관리군)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, 본인이 진료 필요 시 호흡기전담클리닉,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, 동네 병·의원 등에서 전화상담처방 요청 가능
 - 야간 상담처방 필요 시 24시간 운영하는 ‘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’ *▶ 이용
 - ※ 시도, 시군구 지자체는 <서식 나3-1> 등을 활용하여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(www.hurb.or.kr) 시스템 신고
 - * 의사의 진찰을 원칙으로 하되,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사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
 - * (인력) 간호사 인력을 주축으로 의학적 자문을 위해 의사 1인 상시 배치
-
- (격리관리) 확진자 자율관리*로 전환하며, 격리해제도 별도의 통보 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후 격리해제
 - *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추적 등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,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 가능

◆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▶

- 일반관리군의 의료상담 대응을 위해 시군구 또는 시도별로 의료기관에 위탁*하여 24시간 운영
- *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또는 시도 공공병원 등 지정하여 운영

◆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

- 의료적 상담 이외, 생활안내, 의료이용 방법, 격리기간·해제,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 문의
- * 신규 개설 및 기 구축된 재택치료추진단 재정비하여 개설

2 대상자 선정절차 및 방법

※ 재택치료 관련 이외 사항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」(이하 코로나19 대응 지침)의 방안에 따름

○ 보건소는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 등을 기반으로 재택치료자를 분류하고, 재택치료자 중 **집중관리군**과 **일반관리군**을 선별

- 입원 고려 위험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는 시·도병상배정반을 통하여 병상 배정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배정

*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

* 입원요인 판단은 의료진(보건소 또는 관리의료기관)의 의견을 들을 것

※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와 재택치료 예정지 관할 보건소가 다른 경우, 보건소 간 필요정보 공유 및 관리절차 협의

- 방역당국 판단에 따라 배정하고, 생활수칙 의무부과 후 위반 시 제재조치 실시

* 입원 또는 격리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 (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)

○ 집중관리군 및 일반관리군 선정

- (집중관리군) 60세 이상,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[▶]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

▶ **집중관리군: 60세 이상,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*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**

*50대 이상 기저질환자. 당뇨, 심혈관질환(고혈압 등), 만성 신장질환, 만성 폐질환(천식 포함), 활동성 암, 과체중(체질량지수(BMI) 25kg/m² 이상), 면역억제성 질환 또는 면역억제 치료, 겸상적혈구 질환, 신경발달장애

*면역저하자. ①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, ②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, ③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자, ④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,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, ⑤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, ⑥폐이식 환자, ⑦고형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, ⑧HIV감염환자, ⑨심각한 복합 면역결핍증 환자, ⑩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, ⑪비장절제 환자,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, ⑫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자

※ 관련근거: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자 기준 재안내(중수본-6267, 2022.2.10.)

☞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별도 공문 기준에 따름.

- (일반관리군) 집중관리군 이 외 대상자

3 재택치료 통지 및 안내

◆ 재택치료 대상자(동거인)에게 확진자 PCR 양성 통보 시 및 격리통보 시, 확진자·동거인 안내문(링크), 비상연락망, 의료기관·행정안내센터 이용 등 안내(문자 발송)

○ 집중관리군 대상

- ‘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’, 안내문자 발송 등 재택치료 안내

-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▶ 안내

▶ 응급상황 대비 24시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관리팀, 협력의사·관리의료기관 등으로 구성

☞ <부록 1>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, <부록 2> 대상자별 안내 문자

- 건강관리 모바일 앱 설치,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용방법 안내

*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는 격리통지서·재택치료키트와 함께 발급·전달하되, 건강관리 모바일 앱을 설치 한 경우 별도 회신 불필요(앱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진 문자 회신 등으로 갈음 가능)

○ 일반관리군 대상

- ‘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’, 안내문자 발송* 등 재택치료 안내

* 일반, 소아, 임신부 등 대상자별 안내 문자 발송

- 격리기간 중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기관 전화 상담·처방 이용하도록 안내

☞ <부록 1>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, <부록 2> 대상자별 안내 문자

- 응급상황 발생 시, 119 등 연락 안내

◆ (격리통지) 동거인(공동격리자)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(재택치료자)를 통해 일괄 통보 가능

• 격리통지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격리대상자별로 개별발급 또는 일괄발급 가능

• 법정격리통지서 발급 필요 <서식 1> 입원·격리 통지서

• 법정격리통지서의 전달은 지자체별로 편리한 방법 활용(우편, 인편, 이메일, 문자, SNS 등)

•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격리사실 통보 시 법정격리통지서(직인날인)를 파일화(JPG 사진, PDF 등)하여 안내문자에 첨부할 경우 법정격리통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

• 격리통지서 수령증 징구 생략 가능

4 재택치료 대상군별 건강관리

- ◆ 재택치료자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, 격리기간 동안 건강관리
- ◆ 집중관리군 중심 건강모니터링('60세 이상' 재택치료키트 지원)
- ◆ 일반관리군은 필요시 호흡기전담클리닉,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, 동네병의원,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전화 상담·처방을 중심으로 관리
- ◆ 외래진료센터 등을 통한 대면 진료 실시

□ (집중관리군) 건강모니터링 + 전화 상담·처방 실시

- (대상자 등록문진) 재택치료 결정을 통보받은 즉시 의료진이 건강상태 문진 실시 → 고위험군*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 또는 의료기관 전원 실시

* 역학조사서상 입원사유가 없었으나, 대상자 등록 문진 과정에서 입원사유 발견, 증상 악화 경우 등

- 증상 발생시* 반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도록 응급연락체계 사전 안내 강화

* 체온 재측정 후에도 37.5℃ 이상, 발열·기침·인후통·숨가쁨(호흡곤란) 등의 증상 등

- (건강모니터링) 집중관리군은 1일 2회(오전, 오후) 환자의 이상징후 등을 유선 모니터링 하고, '진료지원시스템'에 결과 입력

- 환자가 재택치료키트*를 받은 경우, 이를 활용하여 체온,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도록 안내하고, 건강모니터링 시 측정값 확인

*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시도를 통해 재고 및 정기 수요조사 시행 후 배포

* 체온계, 산소포화도측정기 정상 작동여부 및 측정 수치 반드시 확인

☞ <참고 4> 재택치료키트 구성품

< 재택치료자 심리지원 >

격리기간 동안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총 2회(시작일, 5일차) 실시할 수 있으며, 재택치료자가 관리의료기관에 요청시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

- (진료) 재택치료협력의사 또는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의사가 유·무선 전화,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

*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,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 불가

- 증상 지속 등 전원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은 1회 이상 추가 전화 확인 등 실제 전원 전까지 관리 강화

- 이상 징후 발견시 영상통화 등으로 안부를 즉시 확인하고 전화 상담·처방 실시, 대면진료 필요* 또는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 요청
 - * 외래를 통한 검사, 주사제 처방, 투약 등 필요한 경우
 - 야간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*
 - * 당직 의사가 없거나 비상주(전화 대기)하는 것은 지양
 - 교대 근무로 담당이 바뀌는 경우 의료진 간 환자상태 공유 및 업무 인수인계 철저 수행
 - 기저질환 등으로 환자에게 처방이 필요한 경우, 전화 상담·처방 또는 대리처방 가능
- ☞ ‘한시적 비대면진료 및 대리처방 허용방안’ 등은 ‘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’(중수본) 참고

□ 지자체 확진자 규모, 가용 의료자원 등을 고려하여 재택치료 유형을 결정하고 ‘재택치료협력의사’ 또는 ‘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’ 지정

구분		(유형1) 지자체 주도형	(유형2) 의료기관 주도형
구성 방식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자체 건강모니터링 전담팀 (간호사 고용) 구성(24시간 운영) • 지역 내 협력의료기관 민간 의사* ('재택치료협력의사'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'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'으로 지정·운영
건강 관리	모니터링	지자체 (재택치료추진단 건강관리반)	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
	진료	재택치료협력의사	

※ 지정 신청, 지정서 서식 등 관련사항은 ‘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(중수본)’, 부록(서식) 참고

- 유형1, 유형2 모두 재택치료 대상자 150명당 최소 의사 1~2명, 전담 간호사 3~5명 배정 권고
 - 반드시 지자체 전담팀, 의료기관 모두 24시간 상담·진료,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이 가능한 인력운영체계 마련

□ (일반관리군) 필요시 동네 병·의원 등 전화 상담·처방

- 일반관리군 환자는 별도로 의료기관에 배정하지 않음
- 발열 등 증상 발생시
 - ①동네 병·의원, ②호흡기전담클리닉, ③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,
 - ④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

* 참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(www.hira.or.kr)에서 확인 가능

- ◆ 재택치료 전화 상담·처방형(동네 병·의원 등(①,②,③)에서 전화 상담·처방)
- ◆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(지자체로부터 의료상담센터(④)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·처방 제공)

○ **호흡기전담클리닉·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**(이하 지정 의료기관)에서 검사한 환자**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 등으로 관리(환자 의사에 따라 변경 가능)

* 지정의료기관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전화 상담·처방까지 수행

** ▲RAT 및 PCR까지 실시하여 확진된 경우, ▲RAT만 실시하였더라도 다음 날 해당환자를 통해 PCR 결과 확진을 확인한 경우

-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환자는 환자가 기관을 선택하여 전화 상담·처방 받도록 안내
- 다만, 환자 선택에 따라 검사받지 않은 의료기관에 전화하여 전화 상담·처방 실시 가능

<의료기관 선택 경로>

구분	내용
호흡기전담클리닉,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하여 확진된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확진된 환자는 검사한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·처방 원칙 • 환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 전화 상담·처방 선택 가능
선별진료소에서 확진된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환자는 기관을 선택하여 전화 상담·처방 요청(확진 문자 등을 환자가 의료기관에 제공) 가능
기타 동네 병·의원 이용을 원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환자 선택에 따라 검사받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도 전화 상담·처방 실시 가능

- 총 2회(확진되어 격리해제까지 기간 중)까지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전화 (의사→환자)

* 예: RAT, PCR 검사한 환자에게 의사가 전화하면서 상태 확인 후, 격리해제일 1~2일 전 의사가 다시 전화하여 상태 확인

** 해당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지 않은 환자가 해당 기관에 전화 상담을 요청한 경우는 최초 전화로 같음

- 그 외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·처방 요청 연락을 하면 의료 기관과 상의하여 가능한 시간에 상담(환자→의사)

< 의료기관 전화상담·처방 세부 절차 >

- (진료 접수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내원기록, 확진자 정보 등 조회
- DUR을 통해 확진 여부 확인*, 코로나19 확진자 특정내역 구분코드 입력
- *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환자 본인에게 구두 등으로 확인

◆ 유의사항

-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경우, **진료를 요청한 환자가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대기 요청 및 다른 환자 진료 종료 후 의사와 환자를 연결
 - 환자와 의료기관이 상의하여 가능한 시간에 전화 상담을 진행
 - 우선 통화를 종료한 후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전화(Call-back)
- (문진·처방) 유·무선 전화,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필요시 처방
 - *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,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
- (필요시 처방전 발급)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**모든 동네 약국**(먹는 치료제인 경우 시군구 지정 담당약국)에 처방전 전송
- (급여비 청구) 확진자 정보를 포함한 명세서를 심평원에 청구
- (기타)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

- 필요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**모든 동네 약국**(먹는 치료제인 경우 시군구 지정 담당약국*)에 처방전** 전송 가능

* 먹는 치료제(팍스로비드) 조제·전달이 가능한 약국의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(www.hira.or.kr) '전화 상담·처방 참여 의료기관 등' 팝업창에서 확인 가능

** 처방전에 확진자 여부 및 환자 전화번호 포함,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 등에 활용

- 동거인, 지인 등 대리인이 해당 약국에서 수령하여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

* 공동격리자가 대리인으로 수령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

- 다만, 독거노인,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

□ (공통, 대면진료) 필요 시 외래진료센터 사전예약 후 이용 안내

- (대상자) 재택치료자(병상대기자 포함) 중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
- (주요역할)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 가능한 질환에 대해 ▲검사, ▲처치, 수술, ▲단기입원 등 대면진료 실시

○ (진료절차)

- (접수) 동선 분리 등을 위해 해당기관의 외래진료시간* 내에 사전예약**을 통한 방문 권고

* 기관 여건에 따라 확대 운영 가능

** 필요시 확진자 본인이 직접 예약 → 외래진료센터에서 접수 및 이동방법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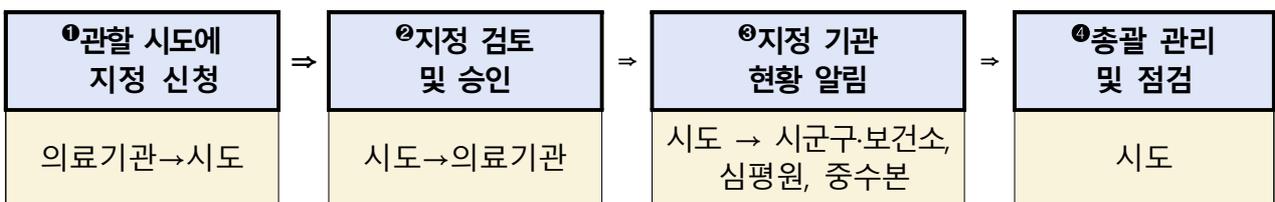
※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(hira.or.kr)을 통해 외래진료센터 명단 및 연락처 공개

- (이동) 도보나 개인차량(본인운전도 가능)으로 이동하고, 필요시 지자체별 이송체계*를 활용하여 자택⇄의료기관으로 이송

* 지자체별 계약된 민간위탁구급차, 방역차량 또는 방역택시 등

- (대면진료)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검사, 처치, 수술,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 실시

○ (지정절차)



※ (관련근거) ①‘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안내’ (보험급여과-6005, 2021.12.1.), ②‘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관련 추진사항 보고’ (중수본-38562호.2021.12.1.), ③‘코로나19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 이용을 위한 개인차량 활용 안내’(중수본-3855, 2022.1.25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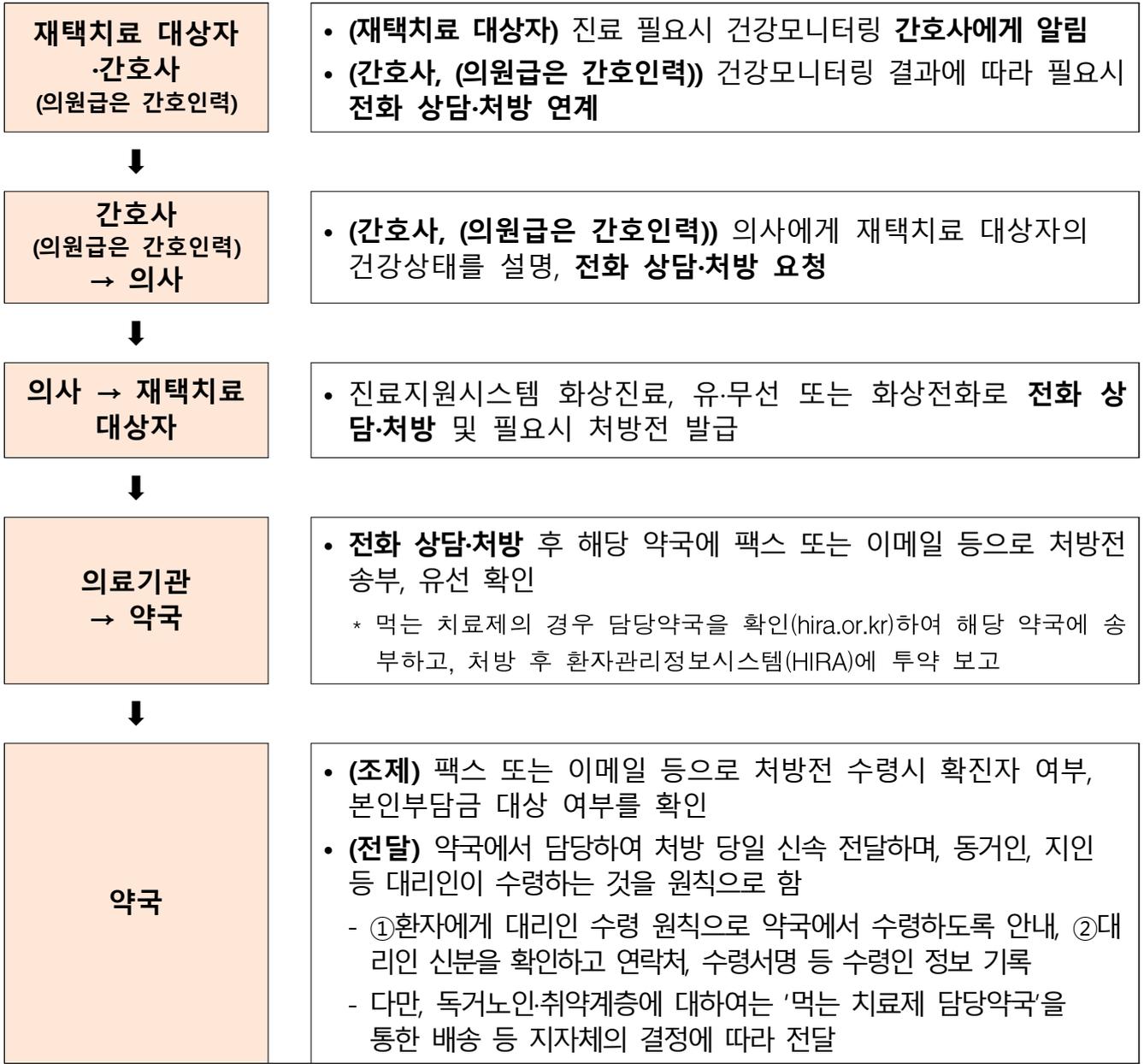
<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 이용 시(비응급 상황 시) 이송수단, 준수사항 >

이송수단	준수사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보 · 개인차량 · 민간위탁구급차, 방역차량 또는 방역택시 등 지자체 관리 이송수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운전자는 접종완료한 방역택시 기사 또는 동거인 (운전시 창문개방) * 외래진료센터 이동시에는 본인 운전 허용▶ · 구급차 이송 시와 동일한 동선 활용 권장 · 백신접종자 운전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야 함
<p>▶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 이용을 위한 개인차량 본인 운전시 유의사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방문하고자 하는 외래진료센터에 사전 예약 및 통보 2) 재택치료자 본인 운전은 비응급상황에 외래진료센터 이용을 위해 한정적으로 허용하되, 확진자가 아닌 사람은 동승 금지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소아 등 차량 동승이 불가피한 경우, 창문을 열고 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앉아서 이동하고 신체 접촉 및 차내 음식섭취 금지 3)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및 운전자 장갑 착용, 하차 후 차내·외 표면 소독 4) 타인과 접촉이 없도록 가급적 혼잡한 공간을 피하고 동선을 최소화하여야 하며, 외래진료센터(주차장 포함) 외 다른 장소 경유 또는 하차 금지 <p>※ 관련근거: '코로나19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 이용을 위한 개인차량 활용 안내' (중수본 -3855, 2022.1.25)</p>	

<재택치료 대상자 진료지원* 절차-집중관리군 대상>

* 관리의료기관 내 전화 상담·처방

- 재택치료 대상자 코로나19 관련 진료 요청 시 또는 건강모니터링 중 **지속적 발열, 호흡곤란, 활력징후 이상** 등이 발생한 경우 관리의료기관 내 전화 상담·처방 연계
- 전화 상담·처방 후 응급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응급이송체계에 따름



◆ 재택치료 대상자 시스템 활용방안

• **(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)*** 재택치료 시작, 해제 사실 입력에 활용(등계 활용)

- *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은 코로나19 환자의 병상배정 현황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심평원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해 접속(hcr.hira.or.kr / (크롬 활용) / 각 기관 인증서는 복사 등으로 공동+동시 사용 가능함
- (시·도 환자관리반) 재택치료 배정 사실 입력 관리
- (재택치료추진단) 재택치료 시작 및 해제 시 상태 입력 관리, 재택치료 중 의료기관 등 전원 시 전원정보 입력(전원기관명, 전원날짜, 전원사유)

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(시·도) 재택치료 배정 사실 입력,
(시·군·구) 재택치료 시작 - 격리해제(또는 이송) 사실을 입력하여야 함

※ 진료지원시스템에 환자정보를 입력하시면 환자관리정보시스템(HIRA)으로 연계되어 의료기관 등에 제공됩니다. 다만, 시스템 간 정보연계는 확진자조사서 입력을 전제로 하므로, 확진자조사서 미입력 환자(이름·주민등록번호 오입력 포함) 등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HIRA에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. 의료기관의 개인단위 치료제 처방이력 관리에 HIRA를 활용하는 등 HIRA에 모든 정보가 모이게끔 관리해주셔야 합니다.

• **(건강모니터링 시스템)***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모니터링에 활용

- * 중수본의 “생활치료센터·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” 활용
- (고위험군 재택치료 대상자) “생활치료센터·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” 앱 설치 및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를 하고, **1일 2회 활력징후**(체온, 혈압/맥박, 산소포화도(만 12세이상), 혈당 등), **임상증상** 입력
- (재택치료추진단·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) 생활치료센터·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(<http://hcms.mohw.go.kr/>)에 접속하여 **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** 실시하고 참여 의료기관 전화 상담·처방 등 활용
- * 모든 활력징후를 입력할 필요 없으며, 재택치료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 판단하에 필요한 건강정보만 입력하도록 안내
- 재택치료 대상자가 입력한 건강기록을 확인하고 **1일 2회 이상은 유선으로** 건강상태 직접 확인

☞ <참고 5> 생활치료센터·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등록·운영 절차 안내

< 재택치료자 심리지원 >

격리기간 동안 **정신건강 자가진단을 총 2회**(시작일, 5일차) 실시할 수 있으며, 재택치료자가 **관리의료기관에 요청시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**

5 응급상황 대비

◆ 기본 원칙 및 주의사항

- 재택치료 대상자(집중관리군)에게 증상 발현으로 인한 악화 시 기본적인 의료상담은 재택치료 담당 의료진에게, 응급상황 시에는 즉시 재택치료추진단 또는 진료 지원앱 응급전화에 연락하도록 사전 안내
 - *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려면 비응급 유증상 환자를 '비응급 상황'으로 안내하여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하고 위급한 환자는 골든타임 내 응급대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
 - 지자체 별로 재택치료팀, 관리의료기관, 소방청, 시도 병상배정반, 이송의료기관 간 24시간 동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핫라인 구축 및 상시운영 필수
 - 지자체별 또는 관리의료기관별 **이송의료기관**을 반드시 **사전에 확보**해야 함
 - * 감염병전담병원 및 관리의료기관 응급실 등 우선 활용 지정
 - * 야간에 이송할 의료기관이 가까운 거리에 사전에 지정되어 있어야 함
 - 일반관리군의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 등에 연락
- ※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(소아, 고령자, 장애인 등)인 경우,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보호자(동거인)에게 함께 안내

□ (이송체계 마련) 재택치료 대상자 규모, 기존 이송체계, 구급차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세부계획 수립 추진

- (재택치료자 안내) 필요시 재택치료추진단 또는 의료기관(24시간 비상연락망)으로 연락
- (비상연락체계)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가능하도록 보건소(재택치료추진단), 협력의사의료기관, 시도119 등 비상연락망 구축

※ 지자체 재택치료추진단, 의료기관 모두 24시간 유선 대기 필수

※ 응급 이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송 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거나, 의료기관 지정(병상 배정) 후 보건소, 시도119(구급차)에 이송 요청

- (의료기관 지정) 지자체 상황·수요를 고려하여 재택치료자 상태에 따라 이송 가능한 복수의 의료기관 사전 지정·확보

* 병원 연계를 기다릴 수 없는 응급인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으로 지정 권장

- (이송수단 확보) 보건소, 의료기관, 민간 구급차, 119구급대 활용 등으로 충분한 구급차 확보 및 다양한 수단 검토

※ 119는 가능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이송 요청

* 지자체별 이송계획에 따라 이송비용 확보 필요

□ (전원이 필요한 증상발현) 환자의 증상이 발현하여 악화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 전원

- (절차) 입원병상 필요시 재택치료추진단은 시·도 병상배정반을 통해 입원 가능 병상 확인 →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 등으로 이송 → 신속·적절한 조치 후 필요시 전담병원 입원·치료, 상태 호전시 귀가

* 지자체별 보건소, 119, 민간구급차 현황을 파악하여, 이송 수단 확보 필요

◆ 전원이 필요한 증상

- 일상생활 중 숨가쁨
-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
-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
- 지속적인 흥통, 식욕부진

- 이송 필요 여부는 재택치료추진단(의사) 또는 증상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서 판단하며 의료기관 이송시, 관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배치된 구급차(보건소, 의료기관, 민간구급차, 119구급차 등)를 활용
- 환자가 이송되는 의료기관/시설에 전달하고자 하는 자료는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지퍼백 등에 담아 반드시 동행자가 지참·전달

□ (응급상황) 호흡곤란, 의식저하 등 의료진이 응급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재택치료추진단 또는 119구급대에 응급이송 요청

- 이송 시 환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유지
- 초응급의 경우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(출발시 인근 병원에 사전 연락)

◆ 소아환자 위험 증상

- 호흡이 빨라지며 연령대비 정상 호흡수를 벗어날 때
- 흉곽함몰이 관찰될 때
- 호흡곤란 또는 그에 따른 이상 징후(코 벌렁임(nasal flaring))가 있을 때
- 무호흡 또는 청색증
- 의식변화, 처짐 또는 경련
- 뚜렷한 음식 섭취 불량, 수유 곤란, 탈수

* 연령별 정상 호흡 수

연령	0~<3개월	3~<12개월	1~4세	5~12세	>12세
호흡수/분	30~60	25~50	20~40	20~30	12~16

- 3개월 미만 소아의 발열(동반 세균감염(균혈증 등) 가능성 고려)
- 정상 산소 포화도(95%) 미만으로 반복적으로 측정되거나,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
- ◆ 성인의 위험 증상 : 호흡곤란, 가슴압박감, 의식저하, 혼돈, 청색증 등

□ (응급이송) 사전에 이송 의료기관 지정 및 이송수단을 확보하여 응급시 병상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담병원으로 이송

- * 재택치료추진단은 해당 의료기관에 수용 가능 여부 확인 및 조치
- 대상자병원 정보 실시간 공유(재택치료추진단, 소방청, 의료기관, 병상배정반 등), 핫라인을 구축하여 재택치료자임을 사전에 인지 후 이송 및 현장조치
- ※ (지자체) 이송 의료기관을 사전 지정하고, 재택치료 대상자 상태(환자중증도, 진료시급성, 대면 진료 필요성 등)에 따라 인근 지역 의료기관에 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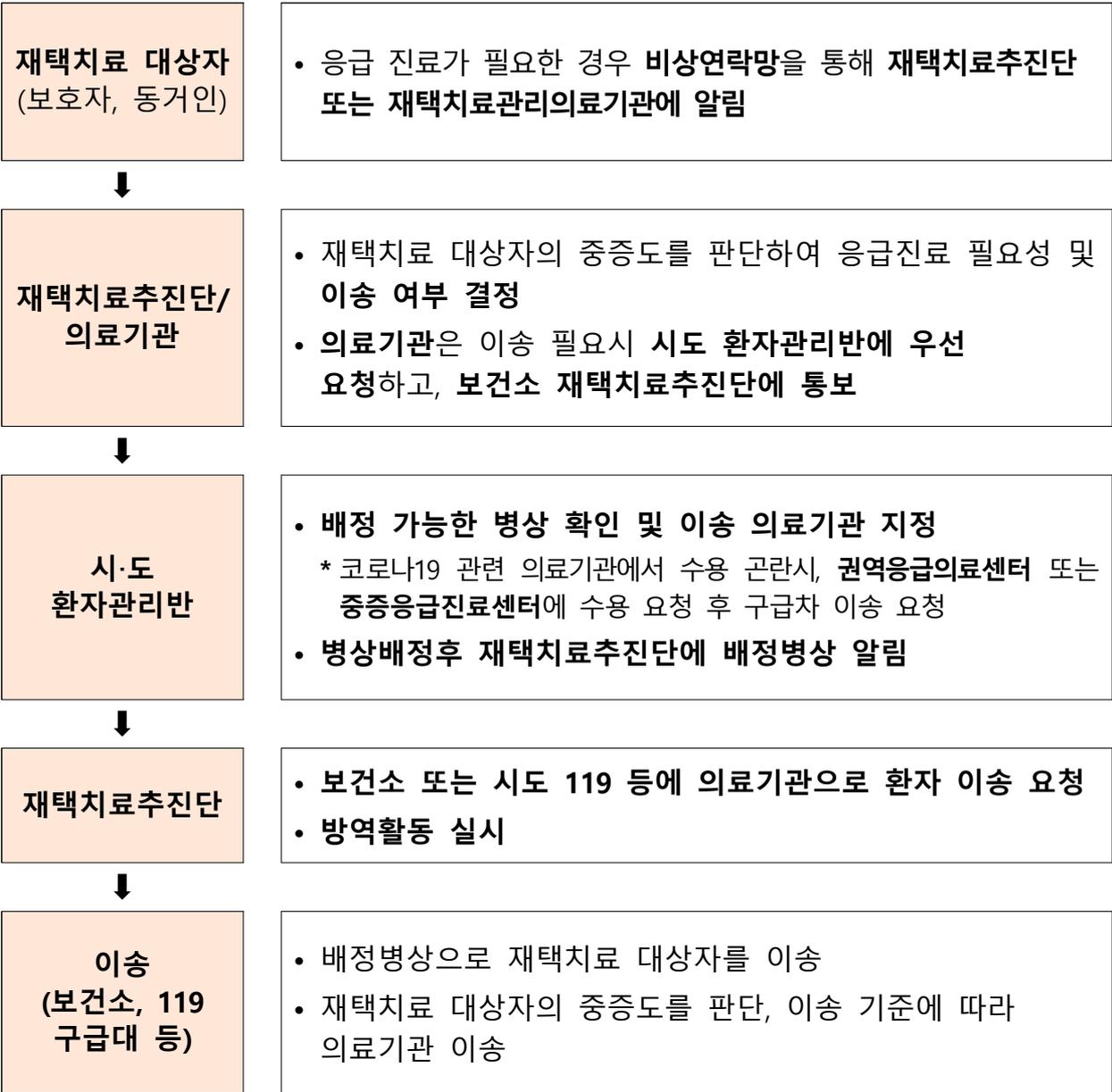
□ (이송 의료기관)

- (감염병전담병원) 중등증 증상이 발생하거나 입원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
- (거점전담병원/중증환자전담병상 등) 중증으로 악화된 경우 또는 중환자 발생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
- (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및 거점생활치료센터) 재택치료 중 증상 악화, 이상 징후 등이 발생하여 1~3일 정도 집중 진료·관리가 필요한 경우
- * 일반 생활치료센터에서도 X-ray, 시설 내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
- (응급의료기관) 생명이 위급한 긴급상황에서는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로 이송

◆ 응급상황 관련 증상

-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
-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
-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
-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

<재택치료자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절차별 내용(집중관리군)>



6 격리관리 및 격리해제

◆ 재택치료자/동거인 격리기준

구분	격리기간 및 관리방식	해제 전검사(PCR)	격리해제 시점
재택치료자* (확진자)	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▶	없음	
동거인	(접종완료자) 격리면제, 수동감시 최초 확진자*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▶ (접종미완료자) 공동격리 최초 확진자*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▶	해제전 1회 (6~7일차)	7일차 24:00 (= 8일차 00:00)

▶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: 출근·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,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

※ 예방접종완료자

3차 접종자, 2차 접종 후 14일-90일인 자

*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확진된 경우, 3차 접종자로 간주

□ (격리 준수 의무)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은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하며, 별도의 이탈관리는 시행하지 않으나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 가능

- (주거지 이탈 인지 또는 사후 확인시) 무관용 원칙(one-strike out)에 따라
정당한 사유*가 없는 경우 고발** 조치(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
시설격리 조치)

* 재난, 응급의료,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, 치매, 착오 등 고의성 없음 등

** 1년 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(감염병예방법) + 형사고발,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

□ 재택치료 대상자

○ (격리해제기준)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▶

- 단,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
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

▶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: 출근·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,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

- (격리해제)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충족* 시 재택치료 해제 가능
 - 격리 7일차 밤 자정(24:00)부터 별도의 통지 없이 격리 해제
 - *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이 원칙 ☞ <참고 6>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

(집중관리군 건강상태 평가) 재택치료협력의사 또는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재택치료의 종료 판단·결정

- 재택치료 해제 판단이 어려운 경우 ▲검사 기반 기준* 적용, ▲시설 또는 병원 치료로 전환, ▲재택치료 기간 연장 등 가능
- *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해제

□ 동거인

- (격리해제기준, 관리방법) 최초 확진자(재택치료자)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▶ 까지, 예방접종력에 따라 수동감시 또는 공동격리 실시
 - 예방접종완료자*: 격리면제 및 수동 감시**
 - * 예방접종완료자: 3차 접종자, 2차 접종 후 14일-90일인 자
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, 3차 접종자로 간주
 - ** 접촉자 중 격리자 및 능동감시 대상자보다 감염 및 전파위험도가 낮게 평가된 접촉자를 대상으로 감시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대상자가 발열, 호흡기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스스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
 - 예방접종미완료자: 공동격리
 - ▶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: 출근·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,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
- (필수 외출) 격리기간 중 외출 일부 허용*(2시간 이내)
 - * 진료, 약 수령, 생필품 구매, PCR 검사 등 관할보건소에 별도 고지 없이 외출 가능 (신속항원검사(RAT) 검사 음성 확인 후 외출을 권고)
 - **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, 타인 접촉 금지, 이동시 도보,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 이용, 대중교통 이용 금지
- (격리해제) 격리·수동감시 해제 전 PCR 검사 음성 확인 시, 최초 확진자(재택치료자)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
 - 최초확진자 격리 7일차 24:00(8일차 00:00)부터 별도의 통지 없이 격리 해제

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,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하며, 최초 확진자(재택치료자) 및 그 외 공동격리자는 격리기간 연장 없음

7 생활관리

□ (생활 수칙) 재택치료 대상자와 가급적 필수 공간(화장실·주방 등)을 분리*하여 사용

- 보호자 및 동거인도 격리기간 중에는 필수 외출 시**를 제외하고는 환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

*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매 사용 후 소독하되, 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사용

** 진료, 약 수령, 생필품 구매, PCR 검사 등

◆ 재택치료 보호자용 주요 생활수칙(예시)

☞ <참고 2> 재택치료 생활수칙 안내문 (예시)

- (건강상태) 보호자는 매일 2차례 이상 환자와 본인의 건강 상태 확인, 재택치료 전담팀·관리의료기관에서 1일 2회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(집중관리군에 한함)
- (감염예방) 보호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자주 손 씻기
 - 아이의 구토 분비물, 대소변 등을 처리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(KF94, N95 이상 또는 동급이상)와 보호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.
- ※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음
- (개인용품) 비누·수건 등 세면도구, 침구류, 식기 등의 개인용품은 확진자와 분리 사용
- (식사) 확진 환자와 함께 식사하지 않고 별도로 식사
- (수유 및 이유식) 젖병에 들어있는 시판 액상분유나 일회용 젖병·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일회용이 아닌 젖병·용기는 사용 후 다른 식기류와 분리하여 철저히 세척
 - 확진 소아에게 모유 수유가 가능하며, 엄마도 확진자인 경우 직접 수유 가능
 - 엄마는 확진자가 아닌 경우, 유축 수유를 권장하며 손위생 준수 필요
 - 이유식은 1회분씩 용기에 소분해서 먹이고, 나머지는 폐기
- (검사) 보호자(공동 격리자)는 확진자가 격리해제시 PCR 검사
 - 격리중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재택치료 전담팀(보건소)으로 연락하여 검사를 받도록 안내
- (세탁) 장갑을 착용하고 오염된 세탁물을 만지며 개인별 세탁물은 단독 세탁, 세탁하지 않은 의류가 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
 - 재택치료 기간 중 착용한 의류는 재택치료 해제 후 반드시 세탁 후 착용
- (청소 및 소독) 격리 기간 동안 일 1회 이상 격리장소 청소 및 자가소독 시행
 - 소아가 자주 만지는 환경은 표면 소독 실시(소독용 티슈 또는 소독액이 묻는

천으로 자주 닦기)

- 격리치료 해제 시 재택치료 장소에 대한 청소 및 소독 시행
- 일반쓰레기는 ① 소독한 후 봉투에 담아 재택치료 기간동안 보관
② 재택치료 종료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·외부 소독 및 이중밀봉 후 배출
- 재활용품, 음식물쓰레기는 ① 품목별로 소독 후 분리 보관 ② 재택치료 종료 후 다시 한번 소독(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·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) 후 배출
- (환기) 정기적, 지속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

□ (방문자 관리) 재택치료 대상자 및 동거인 이외의 방문자 출입 금지

- 격리생활 유지를 위해 방문자가 반드시 출입해야 하는 경우(생활 시설 고장 등) 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철저
- 재택치료자 중 장애인 등 요양보호사나 치료사 등의 방문이 필요한 경우, 방문하는 보호사(치료사)는 예방접종완료이어야 하고,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, 집안 환기·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

□ (폐기물 처리) 생활폐기물로 분류·처리하여, 치료자에게 배출 안내

- 일반쓰레기는 ① 소독한 후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,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소독 후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아 이중밀봉·외부 소독하고 배출
- 음식물쓰레기, 재활용품은 ①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,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(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·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) 후 배출
-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

□ (재난 대비)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택치료자(동거인 포함) 행동 요령 안내

-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(예: 튼튼한 탁자아래 몸을 보호)에 따름
- 재택치료(자가격리)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음
-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,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

IV 재택치료 지원

1 재택치료비 지원

- (지원목적) 재택치료(격리)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, 재택치료비 지원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
- (관련근거) 「감염병예방법」 제7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, 제41조에 따라,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
- (지원대상) ‘코로나19 대응 지침’에 따라 신고되어,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
- (지원범위) 격리통지서를 받아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격리해제 날*까지, 코로나19 관련 치료비 지원,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나 격리해제 후 제공되는 치료는 미지원

* 코로나19 대응 지침 격리해제일 기준 참조

- (비용지급)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, 내국인의 경우* 건보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며, 건보 미가입자 및 필수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보건소에서 지급
외국인의 경우** 건보 가입자의 급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며, 건보 미가입자 및 필수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급

※ ‘재택치료 지급업무’ 위탁 계약 후 건보 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청구는 ‘22년 1월 27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소 업무를 위탁하여 지급함

☞ ‘코로나19 입원·격리(재택)치료비 지원 업무’ 참조

* (청구방법) ‘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(보험급여과-5073(2021.10.8),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(보험급여과-5213(2021.10.18), 5756호(2021.10.18., 2021.11.19.)

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(보험급여과-6005(2021.12.1.),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항체치료제 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(‘21.12.6),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(‘21.12.20) 등을 참고하여 청구

** (청구방법) 의료기관·약국 등은 심평원 시스템(청구포털)으로 청구. 단, 외국인, 건강보험 미가입자, 필수 비급여 부분은 ‘입원(격리) 및 외래 비용 신청서(서식9-1)’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직접 또는 팩스 청구

(‘22.1.1. 진료분부터 심평원 시스템으로 청구(소급적용가능), 계약일 이전 청구한 건은 소급불가(보건소로 청구)

- 보건소(또는 시도)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
 -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하는 재택치료자의 환자본인부담금은 ‘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’에 따라 지자체(또는 질병청)에서 지급함 (외국인은 관할 보건소로 신청→시도 취합 후 질병청으로 신청→질병청 심사 후 지급)
- ※ 외국인 진료비용을 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여부 확인 후, 의료기관 제출 서류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감염병 발생신고서 제출

<재택치료비 지원 절차>		
보건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보건소) 입원격리(재택)통지서 발급(외국인의 경우 예외 대상 여부 확인) · (환자)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재택치료 	보건소/환자
↓		
의료기관 · 보건소 진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의료기관) 담당의가 환자를 전화 상담 후 처방전 발급 · (보건소) 재택치료관리탁(의사)에서 환자를 전화 상담후 처방전 발급 * 의료기관·보건소는 처방전을 약국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 (필수비급여 발생시 '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서식' 함께 전송) 	의료기관 /보건소
↓		
진료비 청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의료기관·약국 등) ~'21.12.31 진료분까지 청구 · 요양급여비용(공단부담금) → 건강보험심사평가원 · 요양급여비용(본인부담금), 필수비급여 → 관할 보건소 * 외국인은 관할 보건소로 신청→시도 취합 후 질병청으로 신청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건강보험공단과 위탁계약(22.1.27) 후 '22.1.1 진료분부터 청구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의료기관·약국 등) · 요양급여비용(공단 및 본인부담금) → 건강보험심사평가원 · 건강보험 미가입자, 필수비급여 → 관할 보건소 * 외국인은 관할 보건소로 신청→시도 취합 후 질병청으로 신청 	의료기관·약국 등/환자 (또는 보호자)
↓		
진료비 지급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~'21.12.31 진료분까지 지급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요양급여비용(공단부담금)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·약국 등에 지급 · 요양급여비용(본인부담금 등), 필수비급여 → 지급여부 검토 후 신청자(의료기관·약국 등)에게 진료비 지급 * 내국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, 외국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건강보험공단과 위탁계약(22.1.27) 후 '22.1.1 진료분부터 지급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요양급여비용(공단 및 본인부담금)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·약국 등에 지급 · 건강보험 미가입자, 필수비급여 → 지급여부 검토 후 시도 및 보건소에서 신청자(의료기관·약국 등)에게 진료비 지급 * 내국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, 외국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	건보공단, 의료기관· 약국 등, 보건소, 질병관리청

2 생활지원비 지원

- (지원개요) 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’에 따라 입원·시설 치료 대상과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
 - ☞ <참고 8>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
 - ☞ 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지침을 따르며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, 국민연금공단지사(유급휴가비용), 읍·면·동(생활지원비)으로 연락
- (유급휴가비)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입원·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신청
 - *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(연차 유급휴가)에 따른 유급휴가(연월차)는 제외
 - * 제외대상: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, 해외입국 격리자, 격리·방역수칙 위반자, 국가·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
- (생활지원비)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입원·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가구 단위로 지원하되, 지원 인원은 가구 내 격리자로 한정
 - * 제외대상: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, 해외입국 격리자, 격리·방역수칙 위반자, 국가·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(다만,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)
 - ※ (지원금액)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입원·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

3 기타 지원

□ (재택치료키트) 60세 이상 확진자에 재택치료키트* 지원

- * 체온계, 산소포화도 측정기, 해열제, 세척용 소독제, (동거인용)자가검사키트(3개)▶
 - ▶ 공동격리자(동거인) 증상발생 시 또는 필수 목적의 외출시 사용
 - ※ 소아확진자용(12세 미만) 재택치료키트(체온계, 해열제, 감기약, 소독제, (동거인용)자가검사 키트)는 요청시 지자체에서 지급
- ☞ <참고 4> 재택치료키트 구성품

서식 2-1

입원·격리(재택) 및 외래 비용 신청서

* 코로나19 입원·격리(재택)치료비 지원 업무(8판)

입원·격리(재택)비용 신청서

접수 보건소명		접수일자	
신청인 (개인 또는 의료기관)	성명(의료기관명)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)	
	전화번호	입원·격리(재택) 대상자와의 관계(의료기관은 작성 생략)	
	주소		
입원·격리 (재택) 대상자 정보	성명	생년월일	
	전화번호	국적	
	신고일자 ¹⁾		
	주소		
입원·격리 (재택) 세부 사항	진단명		
	격리(재택)시작일	격리(재택)해제일	
	확진검사 확인일		
진료비	본인 부담금	원	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 65조(사·도가 부담할 경비) 및 제67조(국고부담 경비)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·격리(재택) 비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

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

제출 서류²⁾

입원·격리 치료비	1. 입원·격리(재택)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[서식1]	
재택 치료비	1. 입원·격리(재택)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[서식1] 의료기관 청구 2. 약제(원외처방) 비용 신청서 서식(약국)[서식2] 약국 청구 * 건강보험 미가입자, 필수비급여분을 보건소로 청구시 제출 서류	
공통서류	1.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*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별지 제6호~제11호 서식 및 「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」 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* 간이 영수(수기용)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2.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(진단명, 격리시작일, 확진검사일, 격리해제일 명시) * 진단일, 확진검사일 등이 기재된 ‘ 법정감염병 신고서 ’ 로 같음 가능 * 입원·격리 기간이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한 경우 격리해제 및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와 구분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(장기) 또는 간호기록 등 추가 제출 * 재택치료자가 무증상, 경증 등으로 재택치료(지자체 주도형, 의료기관 주도형)만 시행한 경우 법정감염병 신고서(재택시작, 해제, 확진일 등 명시)만 제출 가능 3.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① 민간검사결과서,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② 입원·격리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(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* 포함) * 확진환자의 최초 양성결과지 는 진단일, 확진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‘ 법정감염병 신고서 ’ 로 같음할 수 있음	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
입원·격리(재택) 대상자(또는 보호자) 신청 시 제출서류	1. (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) 입원·격리(재택)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.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3. 통장(계좌) 사본 1부	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
의료기관·약국 등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	1. 사업자등록증 1부 2. 사업자 통장(계좌) 사본 1부	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1) 신고일자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입원·격리(재택)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.
- 2)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√ 체크합니다.

서식 2-2

약제(원외처방) 비용 신청서 서식(약국)

* 코로나19 입원·격리(재택)치료비 지원 업무(8판)

약국(원외처방) 비용 신청서

접수 보건소명		접수일자
신청인 (약국)	약국명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명	전화번호
	주소	
재택치료대 상자 정보	성명	생년월일
	전화번호	국적
약제(원외) 처방비	본인 부담금	원
	비급여(외국인의 경우)	원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65조(시·도가 부담할 경비)의 4 및 제67조(국고부담 경비)의 9에 따라 위와 같이 약제(원외처방)비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

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

제출 서류²⁾

공통서류	1. 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1부	<input type="checkbox"/>
	2. 재택치료 환자의 처방전 사본 1부 * 처방전 내 '조제시 참고사항'란에 "H/재택치료", "T/외래진료센터" 문구 명시되어야 함 **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"H/재택치료", "T/외래진료센터" 미기재는 비지원 대상임	<input type="checkbox"/>
약국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	1. 사업자등록증 1부	<input type="checkbox"/>
	2. 사업자 통장(계좌) 사본 1부	<input type="checkbox"/>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√ 체크합니다.

서식 3

격리해제 확인서

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11판)

격리해제 확인서 CONFIRMATION OF RELEASE FROM ISOLATION			
성명 NAME		생년월일 DATE OF BIRTH	
격리해제시 장소명 LAST PLACE OF ISOLATION BEFORE RELEASE	(예시) 자택, ○○의료원 또는 중부권·국제1 생활치료센터 (Example: Home, ○○ Medical Center, Central Region/International 1 Residential Treatment Center, etc.)		
격리시작일 ISOLATION START DATE		격리해제일 ISOLATION END DATE	
<p>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 되었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>This is to confirm that the above-identified person has been released from isolation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releasing COVID-19 case-patients from isolation.</p> <p>※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추가적인 감염전파의 우려가 없으며, 본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. Persons who are discharged/released from isolation according to the COVID-19 isolation release criteria no longer pose a risk for transmission to others. This document may be accepted in lieu of proof of negative PCR test result.</p>			
<p>발행일: (예시) 20</p> <p>△△ 보건소장 (인)</p>			

참고 1 재택치료 근거 법령

○ 감염병예방법 제41조 (감염병환자등의 관리)

제41조(감염병 환자등의 관리)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 관리기관,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(이하 "감염병관리 기관등"이라 한다)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.

②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(自家)치료,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(이하 "시설치료"라 한다)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
2.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
3. 감염병의심자

③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(轉院)하거나,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로 이송(이하 "전원등"이라 한다)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.

1.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
2.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
3.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, 자가치료,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감염병예방법 제47조 (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)

제47조(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

가. 일시적 폐쇄

나.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

다.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

라.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
○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(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)

제23조(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)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, 자가(自家)치료 및 시설치료,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.

별표 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(제23조 관련)

2. 자가치료

가. 자가치료의 방법

- 1) 자가치료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되어 치료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대상자가 장애인·영유아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다.
- 2) 자가치료 중인 사람은 자가치료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. 다만,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,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3) 자가치료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고,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,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한다.
- 4) 의료진, 관계 공무원 등으로 출입자를 최소화하고, 출입자에 대해서는 일회용 장갑,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,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.
- 5) 자가치료 중인 사람이 사용한 일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처분하고, 체온계 등의 물품은 자가치료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한다.

나. 자가치료 절차 등

- 1)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가 가능한 감염병환자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고, 자가치료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.
- 2) 자가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한다.
- 3)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 기간이 끝난 사람 중 자가치료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가치료를 해제해야 한다.

재택치료자용 생활안내문(예시)

※ **일반관리군**은 재택치료추진단 담당자 연락처를 기억하시고, **집중관리군**은 재택치료추진단 담당자 및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담당 의료진 전화번호를 기억하세요. 언제 어떤 때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지만 알면 스스로와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.

1 이웃을 위해 이렇게 하세요.

- 재택치료 기간 중에는 절대 외출을 하지 말아 주세요.
- 재택격리중인 환자와 동거인(접종미완료자)은 격리해제기간 동안 자택에만 계세요.
- 동거인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일상생활이 허용되나, 접종미완료자는 병·의원 대면 진료, 의약품 구매·수령, 식료품 구입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.
- 가급적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고, 생필품 등은 **온라인으로 우선 구매**하세요. (비대면·온라인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, 외출시 **KF94(또는 이와 동급)마스크**를 착용, 2시간이내 외출만 가능)

2 다른 가족을 위해 집에서는 이렇게 하세요.

- 독방을 사용하고, 방에서 나올 때 **KF94(또는 동급)마스크**를 반드시 쓰세요(2미터 이상 거리 유지)
- 식사는 치료기간 동안 혼자 드세요.
- 방문고리, 전등 스위치 등을 매일 한 번 이상 소독 티슈로 닦으세요.
- 밥그릇 등 식기, 수건, 침대, 컴퓨터는 따로 쓰세요.
- 가족 모두 알콜 소독제나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소독하세요.

3 스트레스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.

- 불안해하지 않기 : 코로나19에 걸려도 대부분 집에서 잘 쉬면 크게 고생하지 않고 일주일 내에 낫습니다.
- 가장 좋은 치료법 : 잘 쉬기, 물 많이 마시기, 아프면 진통제 먹기
-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기 : 충분히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, 매일 샤워하기, 자주 크게 숨을 쉬고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 꾸준히 하기, 술 마시지 않기
- 마음은 가까이 :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연락하기

① 집중관리군은 건강관리 앱을 통해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실시하고,
 ② 일반관리군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해 드립니다.

4 이럴 때는 의료진에게 먼저 물어보세요.

-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만성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환자가 발열, 기침, 온몸에 근육통이 생겼을 때
- 아픈데 어떤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실 때
- 더 심해지는지 잘 살펴보고, 기다려도 아래 증상이 조절되지 않을 때

√ 발열, 오한, 기침, 목이 따가움, 코막힘, 콧물, 근육통, 두통, 피곤함
√ 맛을 못 느끼거나, 냄새를 맡지 못함
√ 메스껍고 토함, 설사

5 집중관리군 대상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, 별도 안내된 번호로 연락하세요.

- 본인이나 확진된 가족이 상태가 나빠지는지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.
- 건강상태가 자꾸 나빠지는 것 같다고 느끼시면,
① 먼저, 숨이 얼마나 찬지 확인하고 손가락 산소 측정기로 재봅니다.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더라도 움직일 때 숨이 차다면 바로 재보세요.
☞ 94%보다 낮게 나오면 빨리 별도 안내된 번호로 연락하여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주세요.
② 숨이 차지 않아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호가 있는지 살펴보세요.
- 아래 증상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빨리 연락하세요.

√ 나아지지 않고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함
√ 사람을 못 알아보고 헛소리를 할 때
√ 깨워 놓아도 자꾸 자려고 할 때
√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할 때

☞ 비상상황으로 119에 먼저 연락하시게 되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임을 꼭 밝히세요

6 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.

-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지 말아 주세요.
- (일반쓰레기) 재택치료 종료 후에 소독 후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아 이중밀봉·외부 소독하고 배출
- (재활용품, 음식물쓰레기) ①소독 후 분리 보관 ②재택치료 종료 후 다시 한번 소독(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·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) 후 배출

7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.

-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(예: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)에 따릅니다.
- 재택치료(자가격리)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.
-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,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.

성인 및 재택치료자(집중관리군)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

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감염에 대하여 '재택치료' 하는 성인에게 제공됩니다.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고, 귀하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재택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[재택치료 대상자 준수사항]

-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을 금지합니다.
 - 또한, 재택치료 장소에 모든 외부인(가족, 친구 포함) 방문을 금지합니다.
- 재택치료 환자는 접촉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자택 격리기간(7일)을 반드시 지켜주세요.
 - ※ 지정된 재택치료 장소에서의 무단이탈 또는 격리중 타인 접촉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가 사후 확인될 때는 형사처벌*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- *「감염병예방법」제41조제2항 및 제79조의3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배달 음식 또는 물품을 수령할 경우, 문 앞에 놓도록 하여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습니다.
-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, 관할보건소에서 안내받은 외래진료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.
- 응급상황이 발생하면, 즉시 진료지원앱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*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 - * 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에 안내된 번호 참조
- 재택치료 폐기물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 -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.
 -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 종료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·외부 소독 및 이중밀봉 후 배출하면 됩니다.
 - 재활용품, 음식물쓰레기는 ①품목별로 소독 후 분리 보관 ② 재택치료 종료 후 다시 한번 소독(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·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) 후 배출하면 됩니다.

[자가 건강확인 준수사항 및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 사항]

-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기관*으로부터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(전화, 화상통신 등)을 받게 됩니다.
 - *24시간 상담·진료, 응급상황 대응 가능
- 재택치료자는 재택치료 안내를 위해 발송된 문자의 진료지원 앱(URL 포함)을 설치해 주세요.
- 제공되는 재택치료키트(체온계, 산소포화도 측정기, 해열제, 세척용 소독제, (동거인용)자가검사키트)를 활용하여 매일 건강 정보(체온, 혈압, 맥박, 산소포화도, 혈당 등)를 입력**해주세요.
 - 소아용 재택치료키트(체온계, 해열제, 감기약, (동거인용)자가검사키트)는 요청 시 지자체에서 지급됩니다.
 - * 자가검사키트는 수급상황에 따라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입력자료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을 위해 참고하게 됩니다.
- 치료는 어떻게 받나요?
 - 1) 증상 발생 시에는 ①재택치료 키트 내 약물을 복용해주세요. ②필요 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전화상담·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③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*를 방문하세요.
 - * 사전예약 후, 도보, 개인차량(본인운전 가능), 방역택시 활용, KF94 마스크 착용
 - 2) 먹는 치료제(팍스로비드)는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이 가능합니다.
 - 투약 대상은 60세 이상, 50대 기저질환자, 면역저하자 등입니다.
 - * 병용금지약물 복용자, 신장장애환자, 중증간장애환자는 투여금지 또는 감량투여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
- 코로나19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?
 -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. 그 외에 피로, 식욕 감소, 가래, 소화기 증상(오심·구토·설사 등), 혼돈, 어지러움, 콧물이나 코막힘, 객혈, 흉통, 결막염,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
- 응급상황이 발생하면, 즉시 진료지원앱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*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 - * 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에 안내된 번호 참조

※ 재택치료 배정 알림 예시 (○○구 재택치료추진단)

★★24시 응급콜★★

(1) ○○병원 000-000-0000

(2) ○○구 재택치료추진단 000-000-0000 위급상황으로 119전화시 재택치료 받고 있는
○○○임을 밝히세요.

※ 응급상황 관련 증상

-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
-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
-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
-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

☞ 의료적 상담 이외, 생활안내, 의료이용 방법, 격리기간·해제,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
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'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'에 문의하세요.

소아 재택치료 환자를 위한 안내

코로나19에 걸렸거나 걸렸을지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옮기지 않도록 가능한 혼자 지내야 해요. 불편하고 조금 힘들 수 있지만,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아프지 않게 보호할 수 있어요. 여러분이 당분간 집안이나 방 안에서 지내며 몸이 아픈지 관찰하고 씩씩하게 지내는 것에 가족은 물론,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, 응원하고 있어요!

여러분이 지켜야 할 일들

- 혹시 여러분이 아프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어서 집 바깥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.
- 여러분을 돌봐주는 정해진 어른 1명 외에는 혼자 있게 될 때가 많을 거예요.
집 안에서도 한 곳에만 머물러야 해요.
 - 방문은 닫고 창문을 자주 열어줘야 해요. 식사할 때는 씩씩하게 혼자서 먹어야 하고, 혼자 먹을 수 없는 친구들은 어른이 도와주실 거예요.
 -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해요. 가족들과 같은 화장실을 사용한다면,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난 후에는 잘 닦고 난 후 다른 가족들이 써야 해요.
- 가족들과 예전보다는 말도 적게 하는 게 좋고, 보보나 안아주는 것도 당분간 못하게 될 수 있어요. 혹시라도 병이 다른 가족에게 옮기지 않도록 그러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못을 하거나 안 예뻐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. 가족들, 돌봐주시는 분들과 말을 하거나 잠깐 봐야 될 때는 전보다 좀 멀리 떨어져서 만나야 해요. 서로 팔을 내밀어도 안 닿는 정도예요. 이때 여러분도 가족들도 마스크를 써야 해요.
- 여러분이 쓰는 그릇, 수건, 휴대전화 등은 다른 가족과 같이 사용하지 말고 혼자만 써야 합니다. 옷이랑 이불도 어른들이 여러분 것만 따로 깨끗하게 빨아 주시고, 그릇도 깨끗하게 따로 잘 씻어주실 거예요.
-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.
 -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어야 해요. 밥 먹기 전,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,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난 후
 - 가족들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해요.
 -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고, 기침, 재채기 후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.

여러분이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동안 아픈 곳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다 말씀드려야 해요.

- 아픈 곳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 - 매일 아침, 저녁으로 체온을 재고, 아픈 곳이 있는지 잘 관찰하고, 기침, 콧물, 숨이 차거나 다른 아픈 곳이 있으면 언제라도 어른들에게 얘기하세요.
- 아프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?
 - 열이 나고, 기침이 나와요. 숨 쉬는 게 힘들어 질 수도 있어요. 몸이 떨리거나 아플 수도 있고, 머리나 목이 아프기도 해요. 그리고 냄새를 못 맡거나 예전에 알던 음식 맛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.

영·유아 및 소아 자가격리(치료)자를 돌보는 보호자 안내문(안)

<중앙방역대책본부 · 대한소아감염학회>

영·유아/소아 자가격리(치료)자의 보호자 준수사항

[개인위생 관리]

- 감염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소아청소년의 경우 보호를 위해 가능한 보호자(1인)를 지정하고, 그 외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공동 격리 가족은 최대한 자가격리(치료)중인 아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.
 - 특히,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노인, 임산부, 만성질환,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공동 격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- 외부인의 방문을 제한합니다.
-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자가격리(치료)중인 아이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.
- 보호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.
 - 올바른 손위생 방법에 따라 손씻기를 시행합니다.
 - 특히, 다음의 경우 반드시 손씻기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 - 아이와 접촉 전·후, 아이 주변의 물품이나 가구 등을 접촉한 후, 개인보호구를 탈의 후 즉시 손씻기
- 아이의 구토 분비물, 대소변 등을 처리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 등을 착용하여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-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다른 가족들과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세요.(식기, 물컵, 수건, 침구 등)
 - 자가격리(치료)자의 식기류 등은 세척도 별도로 분리해서 합니다.
- **확진된 영유아 및 소아의 목욕**
 -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목욕시켜야 합니다.
 - 아이가 목욕한 공간은 알코올(70% 에탄올)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(락스, 1,000 ppm 권장)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청소해야 합니다.

[건강관리]

- **자가격리(치료) 중인 아이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.**
 - 체온은 아침, 저녁으로 2번 확인, 체온이 37.5℃ 이상이거나,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 - 발열,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거나, 아이가 평소보다 숨을 빠르게 쉬거나 수유 시 힘들어 하는 경우, 잘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, 입술이 파래지거나 늘어지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연락하여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.
- **격리된 아이에 대한 마음건강지침**
 - 격리 중인 아이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격리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
 - 격리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무섭고, 답답하고, 짜증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주고, 기분이나 걱정을 표현하게 도와주세요.
 - 격리 조치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물어봐 주세요. 정확하면서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고,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.
 - 전화,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선생님이나 친구와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.
 - 심한 불안, 짜증, 행동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정신건강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.

[수유 및 이유식관리]

○ 확진된 영아에게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.

- 엄마도 코로나19 확진환자라면 직접 수유 가능합니다.
- 수유하는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유축하여 수유하는 것을 권장하나, 직접 수유를 해야 한다면 개인보호구*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.
- * 개인보호구: 마스크(KF94 등급 또는 그 이상), 장갑을 권장합니다.
- 수유를 할 때 손위생을 철저히 지키도록 합니다.

○ 분유수유 및 이유식

- 분유는 젖병에 들어 있는 시판 액상분유나 일회용 젖병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일회용이 아닌 일반 젖병을 사용할 경우, 젖병을 다른 식기류와 분리하여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합니다.
- 이유식은 1회분씩 용기에 소분해서 먹이고 나머지는 폐기합니다.
- 식기류는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- 일회용이 아닌 식기류를 사용할 경우, 아이가 사용한 식기류는 따로 모아서 세정제와 온수로 세척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피합니다.

[소독 및 환경관리]▶

○ 자가격리(치료) 중인 아이와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.

○ 가족들과 같은 화장실, 세면대를 사용한다면, 아이가 사용 후 락스(차아염소산나트륨) 등 가정용소독제로 소독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.

○ 테이블 위, 문손잡이, 욕실기구, 키보드,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을 소독제로 자주 닦아주세요.

○ 기저귀 또는 토사물의 관리

- 아이의 기저귀를 갈거나 토사물을 치울 때 손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.
-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,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기저귀를 갈아 주어야 합니다.
- 아이가 확진자 또는 접촉자인 경우 일반쓰레기는 소독한 후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, 음식물쓰레기, 재활용품은 소독 후 분리 보관합니다.
- 재택치료 종료 후 일반쓰레기는 소독 후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아 이중밀봉·외부소독하여 배출하고, 음식물쓰레기, 재활용품도 다시 한번 소독(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·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) 하여 분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이동식 배변기를 사용하는 어린이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다른 형제들과 같이 쓰지 말고 혼자 사용해야 합니다.

○ 장난감 관리

-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난감 표면에 수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어 아이의 격리 기간 동안 장난감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며, 아이 이외의 다른 사람이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.
- 사용한 장난감은 격리해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입증된 소독제로 깨끗하게 소독을 한 후 사용합니다. 가정용 락스(차아염소산나트륨)를 사용할 경우 소독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히 물로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.

○ 세탁이 가능한 직물은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

-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세탁물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- 환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합니다.
- 온수 세탁이 가능한 직물이면 일반 세제를 넣고 70℃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하고, 저온 세탁의 경우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합니다(제품사용서 참조).
- 매트리스나 카펫 등의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(고온) 소독합니다.
- 아이가 사용한 세탁물의 양에 따라 유동적으로 세탁을 하거나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폐기를 하면 됩니다.

○ 폐기물 관리

-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시면 안됩니다.
- 일반쓰레기는 ①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하며, ② 재택치료 종료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·외부 소독 및 이중 밀봉 후 배출합니다.
- 재활용품, 음식물쓰레기는 ① 품목별로 소독 후 분리 보관 ② 재택치료 종료 후 다시 한번 소독(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·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) 후 배출합니다.
-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.

■ 격리기간동안 귀하의 아이에 대해 **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 또는 격리해제일까지** 아래의 방법으로 발열, 증상을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모니터링 시 진료 또는 상담이 필요할 경우 동네 병의원의 전화상담·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상세사항은 하단의 QR코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증상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?

- 집에 있는 체온계로 발열 체크 및 감기 증상이 발현되는지 모니터링합니다.
- 소아용 재택치료키트(체온계, 해열제, 감기약, (동거인용)자가검사키트)는 필요시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지급됩니다.

○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?

- 발열(37.5 ℃ 이상), 권태감, 인후통,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주요 증상입니다.

응급상황이 발생하면, 즉시 119로 연락하시고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☞ 의료적 상담 이외, 생활안내, 의료이용 방법, 격리기간·해제,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'**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**'에 문의하세요.

▶ 질병관리청 대표누리집(홈페이지) www.kdca.go.kr - 알림·자료 - 법령·지침·서식 - 지침

☞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참조

(소독제 희석액 준비, 개인보호구 착용의, 손소독 방법, 환자이용공간 소독방법 등 참조)

접속 정보 및 로그인

▶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

① <https://hcr.hira.or.kr>



① URL 접속

② 

각 시도/보건소는 각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함.
생활치료센터 개설 시 별도의 인증서를 추가발급해 사용토록 해야 함

환자관리

시도 환자배정

> 시도 환자배정

> 시도 환자관리대장

> 생활치료센터관리

> 통계

> 시도별 환자 관리 현황

> 시군구별 환자 관리 현황

> 격리기관별 확진환자 현황

홈 > 환자관리 > 시도 환자배정

환자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관할 시도 시군구 시도변경이력포함

진단상태 처리상태 기관유형 기관기호

· 격리기관 미배정 환자(시도배정 후 5일 경과): · 입원일 미입력 환자(기관배정 후 5일이상 경과): 30일 이상 격리중인 환자: · 기관 현황 관련 완결이 필요한 환자: (총 109171건)

상태	환자번호	질병청 관리사항						공통 입력사항	환자배정정보						
		시도 환자관리반	등록일자	생년월일	환자명	성별	관할 시군구		확진일자	진단상태	기관유형	기관기호	기관명	담당자명	담
	00351882	경기도청	Q	2021-10-24	19	8	남	경기 평택시	2021-10-23	토	전체				
	00351878	경기도청	Q	2021-10-24	19	0	여	경기 군포시	2021-10-23	토	전체				
	00351868	경기도청	Q	2021-10-24	19	2	여	경기 평택시	2021-10-23	토	전체				
	00351866	경기도청	Q	2021-10-24	19	5	남	경기 파주시	2021-10-22	금	전체				
	00351864	경기도청	Q	2021-10-24	19	7	남	경기 김포시	2021-10-22	금	전체				
	00351863	경기도청	Q	2021-10-24	19	7	여	경기 양평군	2021-10-22	금	전체				
	00351860	경기도청	Q	2021-10-24	19	8	남	경기 안양시 만안	2021-10-22	금	전체				
	00351859	경기도청	Q	2021-10-24	20	2	남	경기 부천시	2021-10-22	금	전체				
	00351857	경기도청	Q	2021-10-24	19	1	여	경기 안산시 상록	2021-10-22	금	전체				
	00351856	경기도청	Q	2021-10-24	19	5	여	경기 파주시	2021-10-22	금	전체				
	00351852	경기도청	Q	2021-10-24	19	4	남	경기 양평군	2021-10-23	토	전체				

① 기관유형 클릭

② 보건소(자가치료) 선택

(시·도) 재택치료자 배정

보건의료위키대응시스템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공지사항 환자관리

경기도청 (6410000)님 환영합니다 로그인(59:47) 사이트맵

환자관리

시도 환자배정

환자번호
진단상태
격리기관 미배정
상태 환자번호
003518
003518
003518
003518
003518
003518
003518
003518
003518
003518
003518
003518

④ (새창이 뜨면)

⑤ 관할보건소(실거주지/실제 자가치료지) 검색

관할 시도 전체 시군구 여주시 폐업기관포함 조회

기관기호	기관명	주소	주소지(시군구)	폐업구분
31700110	여주시보건소	경기도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14 (상동)	경기 여주시	

기관기호 기관명 담당자명 담

③ 기관기호(돋보기 모양) 클릭

선택 취소

⑥ 선택 클릭

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 1644-2000

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(반곡동)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우 26465)
COPYRIGHT © 2020 by 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

(시·도) 재택치료자 배정

환자관리

시도 환자배정

> 시도 환자배정

> 시도 환자관리대장

> 생활치료센터관리

< 통계

> 시도별 환자 관리 현황

> 시군구별 환자 관리 현황

> 격리기관별 확진환자 현황

홈 > 환자관리 > 시도 환자배정

⑦ (밖으로 나가서) 저장

환자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- 관할 시도 전체 시군구 시도변경이력포함

진단상태 전체 처리상태 전체 기관유형 전체 기관기호

· 격리기관 미배정 환자(시도배정 후 5일 경과): · 입원일 미입력 환자(기관배정 후 5일이상 경과): 30일 이상 격리중인 환자: · 기관 현황 관련 완결이 필요한 환자: (총 109171건)

상태	환자번호	질병청 관리사항				공통 입력사항		환자배정정보				담당자명	담			
		시도 환자관리반	등록일자	생년월일	환자명	성별	관할 시군구	확진일자	진단상태	기관유형	기관기호			기관명		
	00351882	경기도청	Q	2021-10-24	19	8	남	경기 평택시	2021-10-23 토		보건소(자가치료)	31700110	Q	여주시보건소		
	00351878	경기도청	Q	2021-10-24	19	0	여	경기 군포시	2021-10-23 토		전체	Q				
	00351868	경기도청	Q	2021-10-24	19	2	여	경기 평택시	2021-10-23 토		전체	Q				
	00351866	경기도청	Q	2021-10-24	19	5	남	경기 파주시	2021-10-22 금		전체	Q				
	00351864	경기도청	Q	2021-10-24	19	7	남	경기 김포시	2021-10-22 금		전체	Q				
	00351863	경기도청	Q	2021-10-24	19	7	여	경기 양평군	2021-10-22 금		전체	Q				
	00351860	경기도청	Q	2021-10-24	19	8	남	경기 안양시 만안	2021-10-22 금		전체	Q				
	00351859	경기도청	Q	2021-10-24	20	2	남	경기 부천시	2021-10-22 금		전체	Q				
	00351857	경기도청	Q	2021-10-24	19	1	여	경기 안산시 상록	2021-10-22 금		전체	Q				
	00351856	경기도청	Q	2021-10-24	19	5	여	경기 파주시	2021-10-22 금		전체	Q				
	00351852	경기도청	Q	2021-10-24	19	4	남	경기 양평군	2021-10-23 토		전체	Q				

(시·도) 재택치료자 배정

[보건소]환자관리

자가치리 환자관리

자가치리 환자관리

> 자가치리 ① 자가치리 환자관리 선택 > 자가치리 환자관리

> 자가치리 환자관리

> 지역 환자관리대장

> 지역 환자배정

환자번호 환자명 진단상태 현재상태 Q 조회

입원(소)일 2020-10-24 ~ 2021-10-24

입원일 미입력 환자(기관배정 후 5일이상 경과): 30일 이상 격리중인 환자: 날짜확인이 필요한 환자: (총 150건)

※ 보라색 환자번호, 환자명은 재택진 환자임을 나타냄 격리(관리)환자가 목록에 없는 경우 등 환자 배정 관련 문의는 관할 시도환자관리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문의처 보기 엑셀 내보내기 저장

연계 현황				입원(입소자가격리현황)				PCR검사 음성 판정	
환자 번호	환자명	생년월일	성별	관할 시군구	기관기호	입원(소)일*	진단 상태*	치료상태	1차
00168067		19	8 여자	경기 수원시	31700501	수원시팔달구보건소			
00220216		20	8 남자	경기 수원시	31700501	수원시팔달구보건소			
00262273		19	7 여자	경기 수원시	31700501	수원시팔달구보건소	경증		
00303560		19	5 여자	경기 수원시	31700501	수원시팔달구보건소			
00313725		19	0 남자	경기 수원시	31700501	수원시팔달구보건소	경증		
00343133		20	8 남자	경기 수원시	31700501	수원시팔달구보건소	경증		
00343311		20	13 여자	경기 수원시	31700501	수원시팔달구보건소	무증상		
00347534		19	9 여자	경기 수원시	31700501	수원시팔달구보건소			
00351882		19	8 남자	경기 평택시	31700501	수원시팔달구보건소	2021-10-24 일		
00097364		20	8 남자	경기 수원시	31700501	수원시팔달구보건소	2021-03-18 목		

② 입원일(재택치료 시작일) 입력

③ 무증상/경증 중 선택

④ 저장

(보건소) 배정받은 재택치료자 관리
자가치리 환자관리 → 입원일 입력 → 무증상/경증 선택 → 저장

보건의료위대응시스템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공지사항 [의료기관환자관리] [보건소]환자관리 치료제관리

수원시달구포보건소 (31700501)님 환영합니다 로그인(59:40) 사이트맵

[보건소]환자관리

자가격리 환자관리 자가치료 환자관리

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는 경우

환자번호 환자명 진단상태 현재상태

입원(소)일 2020-10-24 ~ 2021-10-24

입원일 미입력 환자(관배정 후 5일 이상 경과): 49 30일 이상 격리중인 환자: 0 날짜확인이 필요한 환자: 0 (총 158건)

※ 보라색 환자번호, 환자명은 재확인 환자임을 나타냄 격리(관리)환자가 목록에 없는 경우 등 환자 배정 관련 문의는 관할 시도환자관리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문의처 보기 액셀 내보내기 저장

연계 현황 퇴원 정보

환자 번호

전원 사유 간단히 입력 (예 : 산소포화도 수치 악화 / 증상악화 등)

③ 기관 검색

전원(자가격리등) 기관유형

의료기관

의료기관

생활센터

② 의료기관/생활치료센터 선택

④ 전원날짜 입력

⑥ 저장 클릭

① 전원 클릭(바로 옆에 '격리중'으로 표시돼 있어야만 클릭 가능)
"격리중"은 "입원일"이 입력되어야 표시됨

환자 번호	연계 현황	퇴원 정보	전원 사유	처리	리방부
00343588	전원 처리			저장	자가치료
00343589					자가치료
00343622					자가치료
00343623					로
00345538	전원	격리중	자가치료		
00346155	전원	격리중	자가치료		
00346156	전원	격리중	자가치료		
00346521	전원	격리중	자가치료		
00168067	전원	격리중	자가치료		

보건의료위대응시스템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(반곡동)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우 26463)

COPYRIGHT © 2020 by 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

1644-2000

(보건소) 배정받은 재택치료자 관리(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는 경우)

* 전원보낸 환자의 격리해제 입력은 전원받은 기관에서 처리

전원 클릭 → 기관유형 선택 → 기관 검색 → 전원날짜 입력 → 전원 사유 입력 → 저장

[보건소]환자관리

자가격리 환자관리 | 자가치료 환자관리

재택치료자가 재택 중 격리해제 된 경우

- > 자가격리 환자관리
- > 자가치료 환자관리
- > 지역 환자관리대장
- > 지역 환자배정

홈 > [보건소]환자관리 > 자가치료 환자관리

환자번호 환자명 진단상태 현재상태 조회

입원(소)일 2020-10-24 ~ 2021-10-24

입원일 미입력 환자(기관배정 후 5일이상 경과): 49 | 30일 이상 격리중인 환자: 0 | 날짜확인이 필요한 환자: 0

※ 보라색 환자번호, 환자명은 재확인 환자임을 나타냄 | 격리(관리)환자가 목록에 없는 경우 등 환자 배정 관련 문의는 관할 시도환자관리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문의처 보기 엑셀 내보내기 저장

연계 현황						퇴원 정보				
환자 번호	환자명	생년월일	성별	관할 시군구	기관기호	완치일 (격리해제일)	완치유형 (격리해제유형)	사망일	전원일 (자가격리등)	환 상
00343588		20	1 남자	경기 수원시					전원	격
00343589		20	1 남자	경기 수원시					전원	격
00343622		20	8 여자	경기 수원시					전원	격
00343623		19	5 남자	경기 수원시					전원	격
00344824		19	3 여자	경기 수원시					전원	격
00345538		19	5 남자	경기 수원시					전원	격
00346155		20	4 남자	경기 수원시					전원	격
00346156		19	3 여자	경기 수원시					전원	격
00346521		19	2 남자	경기 수원시					전원	격
00168067		19	8 여자	경기 수원시		2021-10-25	무증상-임상기준 통과 무증상-PCR검사 통과 유증상-임상기준 통과 유증상-PCR검사 통과 기타(의료진 판단)		전원	격

① 완치일(격리해제일) 입력

② 완치유형(격리해제유형) 선택

③ 저장 클릭

(보건소) 배정받은 재택치료자 관리(재택치료자가 재택 중 격리해제 된 경우
격리해제일 입력 → 격리해제 유형 선택 → 저장

대상자		
확진자	성인 (60세 이상)	①해열제, ②체온계, ③자가검사키트(3개)*, ④의료용 산소포화도측정기, ⑤세척용 소독제
	소아 (12세 미만)	①해열제, ②체온계, ③자가검사키트(3개)*, ④종합감기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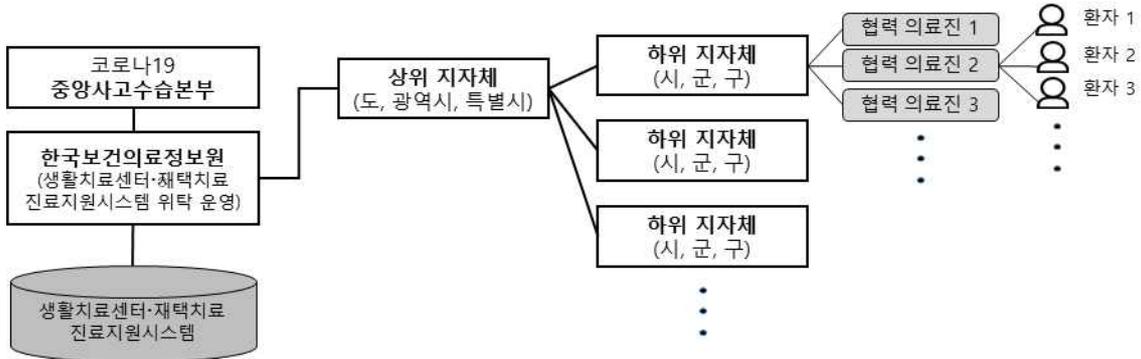
* 동거인용

※ 재택치료자 키트는 60세 이상 확진자에게 지급하며, 12세 미만 소아환자는 보호자 요청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급 가능

◆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 관련, 지자체 재택치료 시행 시 '생활치료센터·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' 활용을 위한 시스템 등록 및 운영 절차 안내

□ **시스템 운영 체계**

<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운영 체계>



① (시도) 재택치료 담당

- ‘재택치료 담당자’ 를 지정하고, 진료지원시스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‘중앙사고수습본부 진료지원팀’ 과 협의
- 시스템 사용이 결정되면, 관할 하위지자체의 ‘시스템 등록신청서’ 및 ‘관리자보안서약서’ 를 취합하여 한국보건의료정보원*에 공문 전달

* ‘생활치료센터·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’ 위탁운영 기관(이하 ‘정보원’)

② (시/군/구) 재택치료추진단

- 관할 시군구별 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‘관리자’ 지정 후 ‘시스템 등록신청서’ 및 ‘관리자보안서약서’ (서식 11, 서식 12) 작성하여 시도 담당자에게 전달
- 관내 협력병원 의료진이 시스템(의료진용 웹)을 사용할 수 있도록 ‘사용자 등록 신청서’ (서식 13)를 작성·취합하고, 의료진ID를 시스템에 등록

※ 의료진 사용자 등록시 지자체는 ‘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’ 함께 징구 및 보관

- 의료진이 모니터링할 재택치료자(환자)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환자에게 스마트폰 앱 접속방법 및 사용법 전달

- 재택치료가 종료된 환자는 시스템에서 환자상태 ‘종료’ 처리
- ※ 환자등록 및 환자상태 종료처리는 재택치료 운영 유형(지자체 주도형, 의료기관 주도형)에 따라 정하여 운영(지자체 담당자 또는 의료기관)

□ 시스템 사용 신청 절차

- ① 재택치료 확대 운영계획(안) 사전 협의(재택치료추진단 → 방대본)
 - * 건강관리를 위한 ‘재택치료추진단’ 구성,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활용계획을 포함하여 방대본 지침에 맞추어 계획 수립
- ② 시도에서 시스템 등록 일괄 신청*(재택치료추진단 → 시도 재택치료 담당(신청 수합) → 중수분, 한국보건의료정보원**)
 - * 시스템 등록 신청서(서식 11), 보안서약서(서식 12) 작성, 문서 출력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파일 제출
 - ** ‘생활치료센터·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’ 위탁운영 기관(이하 ‘정보원’)
- ③ 재택치료추진단 시스템 등록 및 관리자 계정 안내(정보원 → 시도 재택치료 담당 → 재택치료추진단)
- ④ 시스템 운영 교육(정보원)
 - * 교육수요 조사를 통해 시도 단위로 비대면 교육 실시(필요 시 현장 방문 및 시군구 단위 교육 협의 진행)
- ⑤ 사용자 등록(서식 13 활용) 및 시스템 운영*(재택치료추진단)
 - * 재택치료자 기본문진, 건강 모니터링, 비대면진료 등

□ 시스템 운영 절차

- ① (신규 환자 등록) 시·도 환자관리반에서 재택치료 승인 통보 시 재택치료추진단 건강관리반에서 시스템에 신규 환자 등록*
 - * 의료진 시스템(관리자) > 환자관리 > 환자정보 등록
- ② (환자용 모바일 앱 설치) 재택치료추진단에서 보호자(환자)에게 재택치료 통지 및 앱 설치* 안내^[참고9-2]

* 환자용 앱 설치 및 사용법 안내 페이지 : <https://hcms.mohw.go.kr/mobile/helper>

③ (건강정보 자가진단) 환자(보호자)는 재택치료키트를 활용하여 1일 2회 활력징후* 자가측정 → 측정결과와 임상증상**을 모바일 앱에 입력

* 체온, 혈압, 맥박, 산소포화도, 혈당

**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/미각손실, 피로, 식욕감소, 가래, 구토, 설사, 어지러움, 콧물/코막힘, 기타

④ (환자상태 모니터링) 재택치료추진단 의료인은 환자가 입력한 활력징후와 임상증상을 ‘환자현황판’*을 통해 확인

* 의료진 시스템(관리자) > 진료관리 > 환자현황판

- 활력징후 입력값에 이상이 있으면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기기를 바르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후 환자에게 재측정 요청**

** 의료진이 환자의 활력징후 직접 입력도 가능

⑤ (비대면진료) 발열, 호흡곤란, 활력징후 이상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은 화상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료

⑥ (재택치료 해제) 재택치료추진단은 시스템에 등록된 환자정보 수정*

* 의료진 시스템(관리자) > 환자관리 > 환자정보 수정

□ 환자등록 시 참고사항

○ 거주지번호(병동번호) 생성체계(권고) : “OO[읍|면|동]00-0*”

* 00-0 : 지역 내 재택치료자 발생순번 - 가족순번

거주지번호	의미	참고
□□동13	□□동 13번째 등록 재택치료자	1인가구
△△읍77-1	△△읍 77번째 등록 재택치료자로 가족 1번	가족

환자정보등록	
치료센터	테스트생활치료센터
환자번호	환자 번호를 입력해주세요.
* 병동 번호 (거주지번호)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 "동"항목 사용 금지 </div> <div style="margin-left: 20px;"> 예시) 동 1) □□ 동13 호 2) △△읍 77-1(가족발생순번) </div>
* 성별	<input type="radio"/> 남 <input type="radio"/> 여

- 환자(재택치료자) 앱 사용 안내
 - 사용법 안내 웹페이지 : <https://hcms.mohw.go.kr/mobile/helper>
 - 생성된 계정(거주지번호, 생년월일)은 개별 전달 필요
 - ※ 계정 및 재택치료센터명 정보와 로그인 방법을 환자에게 전달
- 문의사항 안내 ※진료지원시스템 앱, 웹 사용법 문의에 한함
 - 콜센터 : 1661-8308 (9:00~18:00, 연중무휴)

□ 시스템 개요

- (시스템명) 생활치료센터·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
- (구축목적)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및 재택치료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비대면진료 지원
- (접속주소) <http://hcms.mohw.go.kr>(관리자, 의료진)

□ 주요 기능

- 환자는 하루 2회 이상 활력징후(vital sign)를 자가 측정하여 모바일 앱에 측정결과 입력 → 의료인은 측정결과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화상통신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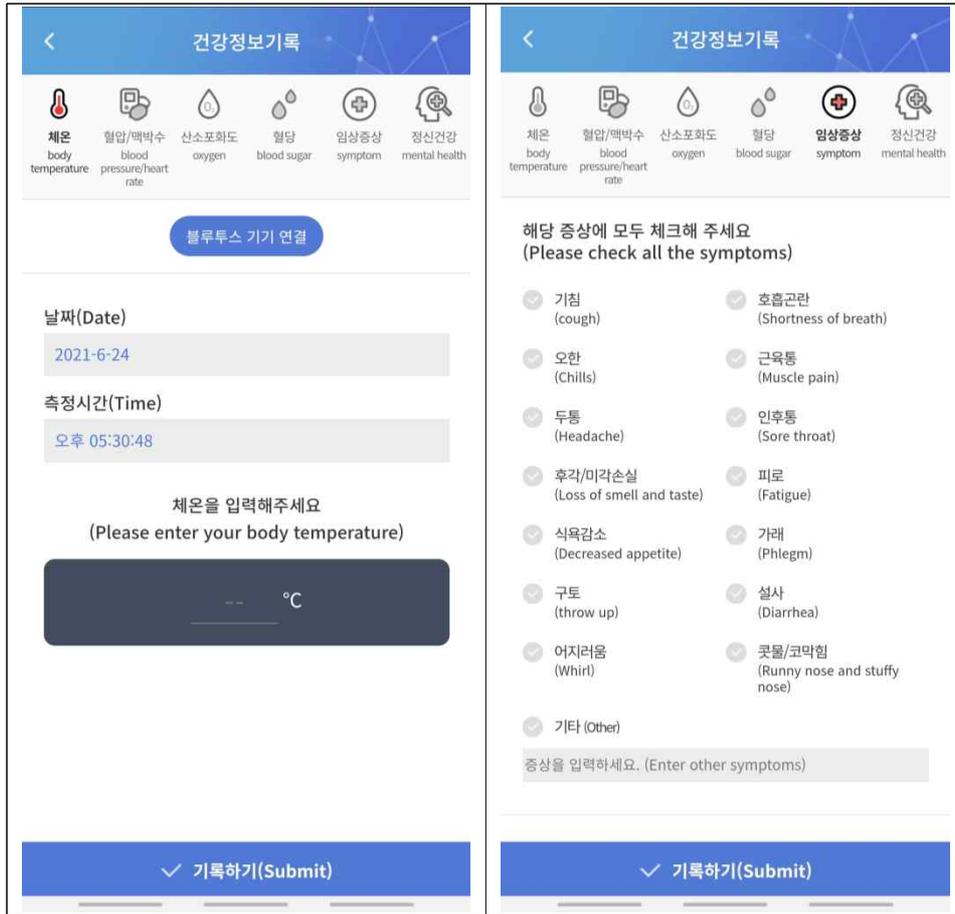
- (환자용 모바일 앱) 입소자 기본문진, 활력징후* 자가 측정결과 입력(또는 블루투스 연동), 임상증상 기록, 정신건강 자가진단, 응급전화 기능 등

* 체온, 혈압, 맥박, 산소포화도, 혈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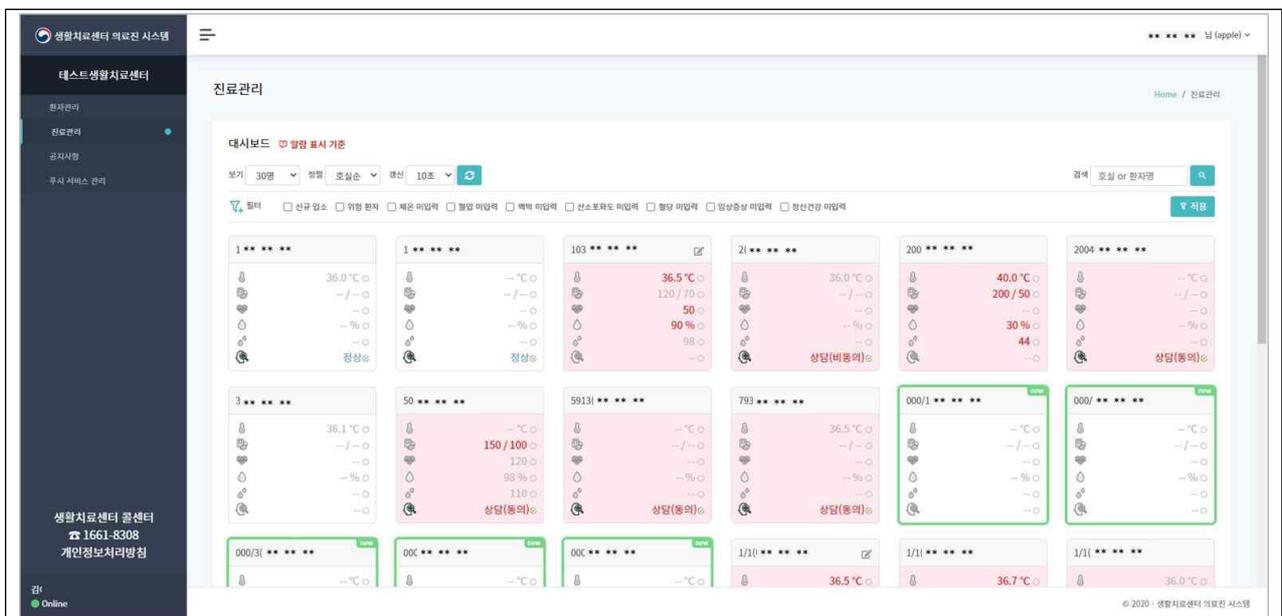
- (의료진용 시스템) 환자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자현황판 및 이상징후 알람, 푸시서비스 및 화상통신 기능 등

* 그 밖에 의료비용(요양급여) 청구 목적 협력병원 EMR시스템 연계 서비스 제공

□ 건강상태 자가진단 (환자용 모바일 앱)



□ 환자 건강정보 모니터링 (의료진용 웹)



참고 5-3

진료지원시스템 환자용 모바일 앱 설치안내

□ 환자용 모바일 앱 설치 방법

○ 설치 방법

* 안드로이드폰 :  선택 후 “생활치료센터” 검색 후  앱 설치

* 아이폰 :  선택 후 “생활치료센터” 검색 후  앱 설치

※ 설치 안내 웹 페이지 : <https://hcms.mohw.go.kr/mobile/helper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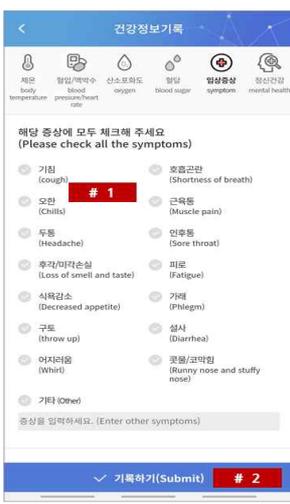
○ 로그인 방법

센터 선택	재택치료 > 관할 재택치료추진단 선택
거주지번호	거주지번호는 관할 재택치료추진단에서 부여
비밀번호	생년월일 8자리 (예 : 19990101)

○ 사용 문의 : 1661-8308 (운영 시간 : 평일 및 주말·휴일 09시~18시)

※ 상담원이 통화 중인 경우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, 상담원이 순차 회신 드립니다.

□ 환자용 모바일 앱 주요 기능 사용법

로그인 화면	첫 화면	건강정보기록(활력징후)	건강정보기록(임상증상)
			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언어 선택(외국인 환자) 재택치료 선택 현재 거주 지역 선택 해당 재택치료 센터명 선택 거주지 번호입력 생년월일 8자리 입력 (예시 : 19710101) <p>※ 거주지 번호는 콜센터 통해서 확인 가능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체온, 혈압 등 건강정보를 1일 2회(오전, 오후) 입력 문진 정보 입력 (총 1회만 입력) 입력한 건강정보기록 및 문진 정보 조회 온라인화상으로 의료진과 1 : 1 비대면진료 건강정보기록 블루투스 연결을 위한 기기 등록 본인에게 전달된 모든 푸시 메시지 정보 조회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이 측정한 건강정보 (체온, 혈압, 산소포화도 등) 입력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한 기기가 있는 경우 선택 후 기기 연결 기록하기 선택하면 입력 정보가 저장됨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재 본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모두 체크 기록하기 선택하면 입력 정보가 저장됨

1.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

가.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

- (기간)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▶▶
- 7일 차 자정(24시)(8일 차 0시) 해제
- (증상)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

▶ (예시) 진단 시 무증상자

11.1.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.7. 24:00 격리해제 가능

▶ (예시) 진단 시 유증상자

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: 11.1. 12시 증상 발생 → 11.2. 검체채취 → 11.4.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→ 11.8. 24:00 격리해제 가능

▶ **임상증상 호전 기준(기저질환자)**

- 기저질환(증상)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(증상)이 있는 경우 →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, 호전으로 판단 가능

▶▶ **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: 출근·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,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**

▶ **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및 활동 기준(예)**

- (시설) 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(식사, 음주, 음료, 목욕 등) 실내, ②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, ③ 거리두기(2m) 유지가 어려운 실내, ④ 미접종 연령군(17세 이하) 다빈도 이용시설
- (활동) ①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(운동, 노래, 합성 등), ② 장시간 실내 체류

▶ **감염 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**

- 감염 시 사망위험이 높은 환자·입소자에 대한 면회, 노인·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여가 및 생활 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
- 의료기관, 요양병원·시설, 중증장애인·치매시설, 경로당·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(경로당, 노인복지관, 치매보호시설,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)

나.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(위중증▶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)

▶ 위중증 : 고유량 산소요법, 인공호흡기, ECMO, CRRT 치료 적용

- (검사) 검체채취일로부터 최소 10일 경과, 최대 20일▶까지 적용(20일 경과 시 격리해제)
- (증상)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

▶ (참고문헌) van Kampen, J.J.A., van de Vijver, D.A.M.C., Fraaij, P.L.A. et al. Duration and key determinants of infectious virus shedding in hospitalized patients with coronavirus disease-2019 (COVID-19). Nat Commun 12, 267 (2021)

▶ **임상증상 호전 기준(기저질환자)**
- 기저질환(증상)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(증상)이 있는 경우 →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또는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 치료가 안정적일 때, 호전으로 판단 가능

▶ **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 시 증상 기준과 관계없이 격리해제함**
○ 단, 중증 면역저하자*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를 연기할 수 있음
-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
- HIV/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
-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
- 최근 3개월 내 기저질환으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은 자 등

※ (참고문헌) 영국 보건부 「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-19 patients(‘20.5.20)」의 ‘7.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’

▶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상기 예시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,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한 경우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해제 시기를 결정

▶ (예시)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
11.1. 12시 증상 발생 → 11.2. 검체채취 → 11.8. 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→ 11.11. 24:00 이후 격리해제 가능

◆ **참고**
○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
○ 격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검사기반 기준 적용 가능

※ **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**
○ (검사)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
○ (증상)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 미발생 또는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
- 검사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
○ 임상경과 기반 기준은 환자의 타 질환 임상 경과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함

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

■ 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에 따른 ‘격리해제기준’에 부합하여 격리해제 되었습니다.

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.

<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>

◎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*▶

* 7일 차 자정(24시)(8일 차 0시)부터 해제

- (진단 시 무증상자)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
- (진단 시 유증상자) 최소 24시간**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

**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,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: 48시간

▶ 7일 후 격리해제 되신 경우 3일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. 출근·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,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셔야 하며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은 제한하시고, 사적모임 등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.

<검사 기반 격리해제>

◎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

- (진단 시 무증상자)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
- (진단 시 유증상자)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, 임상증상 호전 추세

■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된 경우, 추가적인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습니다.

☞ 단, 해제 후에도 PCR 검사 시 양성 반응이 있을 수 있으며, 이는 PCR 검사는 전파력이 없는 비활성 바이러스(죽은바이러스 찌꺼기 등)도 검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

■ 「격리해제 확인서」는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로서, 「PCR 음성확인서」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.

- 따라서, 적법하게 발급된 격리해제확인서(보건소) 또는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, 일상생활, 의료기관이용, 직장 및 업무복귀 등이 가능합니다.

■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의 심리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- 정신건강센터: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

* <http://www.ncmh.go.kr/ncmh/main.do>

- 근로자 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

* <http://www.kosha.or.kr/kosha/business/healthcenter.do>

■ 격리해제 후에도 위생수칙,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.

- 마스크 착용,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준수

※ 귀하께서 격리해제 당일 발열 등 코로나 관련 증상이 느껴질 경우 현장 의료진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.

*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 등

참고 8

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

※ ‘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(3판)’/‘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(3판)’(중앙방역대책본부 ‘22.2.14.)

① 유급휴가비

- (신청자격) 코로나19로 입원·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 - *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(연차 유급휴가)에 따른 유급휴가(연월차)는 제외
 - ** 제외대상: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, 해외입국 격리자, 격리·방역수칙 위반자, 국가·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
- (지원금액)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(日給) 임금 해당 금액(단, 1일 최대 73,000원까지만 지원)
- (신청기관) 국민연금공단 지사
- (신청서류)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, ② 입원·격리통지서,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, ④ 재직증명서,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, ⑥ 사업자 등록증, ⑦ 통장사본 등

② 생활지원비

- (신청대상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원·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 - * 제외대상: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, 해외입국 격리자, 격리·방역수칙 위반자, 국가·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(다만,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)
- (지원금액)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

<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>

(단위 : 원/14일 월액 상한)

가구 내 격리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2022년 지원액	488,800	826,000	1,066,000	1,304,900	1,541,600	1,773,700

- 1)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,000원씩 추가 지급
- 2)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

- (신청기관)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
- (신청서류) ① 생활비지원 신청서,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등
 - *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 안내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,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입원·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, 그 밖의 입원·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중복지원 불가)

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

□ 신청자격 : 코로나19로 입원·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
*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(연차 유급휴가)에 따른 유급휴가(연월차)는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

□ 지원제외 대상 입원·격리자

- ① 「감염병예방법」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·격리자
- ② 해외입국 격리자
-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
- ④ 입원·격리자 본인이 국가·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
 -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제2조제1호 가~다,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
 - * 다만,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 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
 - 「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

□ 지원금액 :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(日給) 임금 해당 금액(단, 1일 최대 73,000원까지만 지원)

□ 신청기관 :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

□ 신청기간 :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

□ 신청서류 :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·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

※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.

생활지원비 신청 안내

신청자격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원·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
지원제외 대상 입원·격리자

- ①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·격리자
- ② 해외입국 격리자
-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
- ④ 입원·격리자 본인이 국가·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
 -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제2조제1호 가~다,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
 - * 다만,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 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
 - 「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
 - ☞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(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)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'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'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

지원금액 :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 일수에 곱하여 지원

<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>

(단위 : 원/14일 월액 상한)

가구 내 격리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2022년 지원액	488,800	826,000	1,066,000	1,304,900	1,541,600	1,773,700

- 1)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,000원씩 추가 지급
- 2)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

신청기관 : 관할 읍·면·동

신청기간 :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

신청서류 :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등

*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(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)

※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(☎)으로 연락바랍니다.

부 록

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(‘22.2.14 기준)

*최신 및 추가 자료는 '코로나19 누리집'(ncov.mohw.go.kr)에서 확인

질병관리청

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

공통안내문 ①

귀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. 빠른 쾌유를 바라며,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, 치료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 본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되오니, 동거인에게도 아래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

확진자

! 치료안내

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,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,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.

- ✓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,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.
- ✓ 증상이 있을 때는 **진통해열제, 종합감기약** 등을 복용하세요.
* 단,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(60세 이상, 50대 기저질환자, 면역저하자)은 항바이러스제(먹는치료제) 투약 가능
- ✓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, **전화 상담·처방**이 가능합니다.
*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

재택치료 개요



! 격리안내

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(생활치료센터, 전담병원)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.

- ✓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**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.** 화장실·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, 자주 소독하세요.
*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
- ✓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**7일 차 자정(24:00)에 해제***되며,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.
*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: 출근·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,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
- ✓ 격리 안내는 확진자가 동거인에게도 전달하여 격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2.14.

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

공동안내문 ②



최신정보를 바로 확인해보세요.

동거인

! 격리안내

확진 받기 전후,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거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격리와 모니터링, 검사가 필요합니다.

- ✓ 동거인은 재택치료자 확진 직후 PCR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✓ 격리기간은 최초 확진자와 동일*하여, 확진자의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실시하게 됩니다.

*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(24:00) 해제 /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
- 단, 동거인 중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로 외출이 허용됩니다.

※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가 발생할 경우, 추가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며, 그 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없습니다.

- ✓ 격리기간 중 병·의원 대면진료, 의약품 구매·수령,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됩니다.

*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고 / 생필품은 온라인 구매 우선 권고

- ✓ 격리 및 감시는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해제*됩니다.

*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: 출근·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,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

! 건강관리

매일 아침·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, 증상 발생 시에는 검사를 받습니다.

- ✓ 코로나19 의심증상*은 발열(37.5°C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 등입니다.

*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취소

- ✓ PCR 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합니다.

- 반드시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도보,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합니다.

!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!

-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(예: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)에 따릅니다.
- 재택치료(자가격리)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.
-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,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.



의료적 상담 이외, 생활안내, 의료이용 방법, 격리기간·해제,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'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'에 문의하세요.

재택치료 안내문

집중관리군

*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



최신정보를 바로 확인해보세요.

건강 모니터링

- ✓ 재택치료자는 재택치료 안내를 위해 발송된 문자(URL) 또는 QR 코드를 이용하여 진료지원 앱을 설치해 주세요.
- ✓ 매일 건강 정보(체온, 혈압, 맥박, 산소포화도, 혈당 등)를 측정하여 진료지원 앱에 입력해 주세요.
- ✓ 재택치료키트^{1),2)}를 받은 경우, 체온, 산소포화도 측정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- 1) 체온계, 해열제, 산소포화도측정기, 세척용 소독제, 자가검사키트(자가검사키트는 동거인용)
- 2) (소아용) 체온계, 해열제, 감기약, 자가검사키트(자가검사키트는 동거인용) - 보호자 요청 시 지자체에서 지급



치료 안내

- ✓ 증상 발생 시에는 ① 재택치료 키트 내 약물을 복용해 주세요.
② 필요 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전화상담·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③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외래진료센터*를 방문하세요.
* 사전예약 후, 도보, 개인차량(본인운전 가능), 방역택시 활용, KF94 마스크 착용
- ✓ 먹는 치료제(팍스로비드)는 의사의 판단 하에 처방이 가능합니다.
- 투약 대상은 60세 이상, 50대 기저질환자, 면역저하자 등입니다.
* 병용금지약물 복용자, 신장장애환자, 중증간장애환자는 투여금지 또는 감량투여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
- ✓ 응급상황이 발생하면, 즉시 진료지원 앱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*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* 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에 안내된 번호 참조

① 재택치료 배정 알림 예시 (○○구 재택치료추진단)

- 24시 응급콜
- ① ○○병원 000-000-0000
 - ② ○○구 재택치료추진단 000-000-0000
 - ③ 위급상황으로 119 전화 시 재택치료 받고있는 ○○○임을 밝혀주세요.

① 응급상황 관련 증상

- ✓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
- ✓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
- ✓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
- ✓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

? 의료적 상담 이외, 생활안내, 의료이용 방법, 격리기간·해제,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'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'에 문의하세요.

2022.2.14.

재택치료 안내문

일반관리군

*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



최신정보를 바로 확인해보세요.



건강관리

- ✓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하세요.
- ✓ 필요 시 동네 병·의원과 호흡기진료 클리닉 등을 통해 전화 상담·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상담 및 치료 안내

- ✓ **치료가 필요하다면, 동네 병·의원, 호흡기전담 클리닉,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·처방*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* 1일 1회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 (만 11세 이하 소아확진자(예방접종미대상군)는 1일 2회 가능), 추가 본인 부담은 없음
 - **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(www.hira.or.kr)에서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 가능
 - **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, 사전예약을 하고 단기외래진료센터***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.
 - * 도보나 개인차량(본인운전 가능), 방역택시를 활용하여 진료센터로 이동이 가능하며, 이 때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
- ✓ **전화 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은 경우, 조제된 약은 가족 등 동거인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**
 - 동거인의 수령이 어려운 경우, **약국으로부터 배송** 받습니다.
 - *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(www.hira.or.kr)에서 재택치료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·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 확인 가능
- ✓ **야간 상담·처방이 필요하다면,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*에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.**
 - *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✓ **응급상황이 발생하면, 119 등에 연락하세요.**

Ⓜ 응급상황 관련 증상

- ☑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
- ☑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
- ☑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
- ☑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



의료적 상담 이외, 생활안내, 의료이용 방법, 격리기간·해제,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'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'에 문의하세요.

2022.2.14.

동거인 안내문

*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



가족 간 전파 예방

✓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.

-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,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.
-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.
- 환기*와 표면소독(소독티슈 등을 이용)을 자주 실시합니다.

* 하루 최소 3회 이상, 10분 이상 환기,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

건강관리

✓ 매일 아침·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, 발열,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자가검사키트로 우선 검사합니다.

- 코로나19 의심증상*은 발열(37.5°C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 등입니다.

*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취소

✓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습니다.

* 우선검사대상자에 해당함

- 외출시에는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도보,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합니다.

✓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, 호흡기전담클리닉, 동네 병·의원 등을 통해 의료진에게 전화 상담·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전화상담 및 처방은 원격진료 가능 병·의원을 이용합니다.

* 단,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

✓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!

-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(예: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)에 따릅니다.
- 재택치료(자가격리)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.
-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,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.



의료적 상담 이외, 생활안내, 의료이용 방법, 격리기간·해제,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'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'에 문의하세요.

2022.2.14.

1

일반관리군 안내문자(예시)

□ 안녕하십니까

홍길동님께서서는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에 해당되십니다. 격리기간 중 자택에서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시면서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, 다음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·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- ① 호흡기전담클리닉,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< 000병원 : xxx-xxxx-xxxx >
- ② 기존에 다니던 동네 병의원(내과, 이비인후과, 소아청소년과, 가정의학과 등)
- ③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< 0000병원(상담센터명) : xxx-xxxx-xxxx >

① 위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(www.hira.or.kr) '코로나19 전화 상담·처방 참여 의료기관 등 안내 바로가기' 팝업창에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 내 전화 상담·처방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재택치료 의료상담 센터를 통해서야 야간 등 24시간 의료상담·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② 상황에 따라 대면 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, 미리 센터에 예약(본인예약) 후, 도보,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< 000병원(외래진료센터명) : xxx-xxxx-xxxx >

③ 의료적 상담 이외에, 격리 시 준수사항, 생활지원금 등과 같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지자체 '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'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: xxx-xxxx-xxxx >

④ 재택치료에 대한 상세사항은 「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」 <https://c11.kr/wpv5> (클릭)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안녕하세요

홍길동님께서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에 해당되십니다. 격리기간 중 자택에서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시면서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, 다음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·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- ① 호흡기전담클리닉,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< 000병원 : xxx-xxxx-xxxx >
- ② 기존에 다니던 동네 병의원(내과, 이비인후과, 소아청소년과, 가정의학과 등)
- ③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< 0000병원(상담센터명) : xxx-xxxx-xxxx >

① 위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(www.hira.or.kr) '코로나19 전화 상담·처방 참여 의료기관 등 안내 바로가기' 팝업창에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 내 전화 상담·처방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재택치료 의료상담 센터를 통해서 야간 등 24시간 의료상담·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② 소아·청소년의 경우, 기존에 다니던 소아청소년과에서 평상시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므로, 보다 효과적인 전화 상담·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.

③ 상황에 따라 대면 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, 미리 센터에 예약(보호자 예약) 후, 도보,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< 000병원(외래진료센터명) : xxx-xxxx-xxxx >

④ 의료적 상담 이외에, 격리 시 준수사항, 생활지원금 등과 같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지자체 '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'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: xxx-xxxx-xxxx >

⑤ 재택치료에 대한 상세사항은 「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」 <https://c11.kr/wpv5> (클릭)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**일반관리군 안내문자(임산부용)(예시)**□ **안녕하십니까**

홍길동님께서서는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에 해당되십니다. 격리기간 중 자택에서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시면서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, 다음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·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- ① 호흡기전담클리닉,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< 000병원 : xxx-xxxx-xxxx >
- ② 기존에 다니던 동네 병의원(내과, 이비인후과, 소아청소년과, 가정의학과 등)
- ③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< 0000병원(상담센터명) : xxx-xxxx-xxxx >

① 위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(www.hira.or.kr) '전화 상담·처방 참여 의료기관 등' 팝업창에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 내 전화 상담·처방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해서 야간 등 24시간 의료상담·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② 임산부의 경우, 기존에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평상시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전화 상담·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.

< 0000병원(상담센터명) : xxx-xxxx-xxxx >

③ 상황에 따라 대면 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, 미리 센터에 예약(본인 예약) 후, 도보,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< 000병원(외래진료센터명) : xxx-xxxx-xxxx >

④ 의료적 상담 이외에, 격리 시 준수사항, 생활지원금 등과 같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지자체 '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'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: xxx-xxxx-xxxx >

⑤ 재택치료에 대한 상세사항은 「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」 <https://c11.kr/wpv5> (클릭)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

집중관리군 안내문자(예시)

□ 안녕하십니까

홍길동님께서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에 해당되십니다. 격리기간 중 자택에서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시면서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에 성실히 응하여 주시고,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별도로 안내된 번호로 연락하여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재택치료 배정 알림 예시 (○○구 재택치료추진단)

★★24시 응급콜★★

(1) ○○병원 000-000-0000, (2) ○○구 재택치료추진단 000-000-0000

위급상황으로 119전화시 재택치료 받고 있는 ○○○임을 밝히세요.

① '생활치료센터·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앱' 설치를 부탁드립니다.(※ 전화, 알림, 위치 등 권한 및 푸시알림 푸시 허용)

② 생활치료센터·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앱 설치 안내(건강모니터링용)

- ◆ 설치 방법 : 구글 플레이스토어·앱스토어에서 "생활치료센터" 검색 및 "생활치료센터 비대면진료" 앱 설치
- ◆ 설치 후, "재택치료" 선택 > 인적사항 등 입력
- ◆ 1일 2회 이상 활력징후(체온, 산소포화도 등) 및 임상 증상 입력

③ 60세 이상 확진자는 5종의 재택치료키트*가 제공됩니다. 제공되는 키트를 활용하여 건강상태를 관찰하여 주시고 진료지원시스템 앱에 건강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체온계, 산소포화도 측정기, 해열제, 세척용 소독제, (동거인용)자가검사키트

* 산소포화도 측정기 사용법(조인메디칼사, 알트코리아사) 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Z3MjYPtA_Ns

* 산소포화도 측정기 사용법(참케어 참2) : 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FP8nnqhi7mc>

④ 진료지원시스템 앱에 입력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, 필요시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⑤ 격리기간 동안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총 2회(재택치료 시작일, 시작일+5일) 실시하실 수 있으며, 필요 시 요청하시면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⑥ 상황에 따라 대면 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, 미리 센터에 예약(본인 예약) 후, 도보,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< 000병원(외래진료센터명) : xxx-xxxx-xxxx >

⑦ 의료적 상담 이외에, 격리 시 준수사항, 생활지원금 등과 같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지자체 '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'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: xxx-xxxx-xxxx >

⑧ 재택치료에 대한 상세사항은 「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」 <https://c11.kr/wpv5> (클릭)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